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4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주최__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후원__ (재)4.9통일평화재단

순서

■ 발제

[발제1]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03
이계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09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닌가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발제3]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40
김광원 | 다산인권센터
엄진령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전체토론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이계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syi@konkuk.ac.kr

I. 민간경비(용역폭력/사적 폭력)의 전개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국가의 독점영역인가? 막스 베버 식으로 말하면 그렇다. 근대국가의 본질은 폭력의 독점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이런 생각이 動搖한다. → 동요의 원인은 국가의 輕量化. 공공성의 포기. ex.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재개발)사업. 나아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상실. ex. 공무원법의 유연화와 회전문 인사. (고위)공무원들 스스로 자신을 공적 인 주체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고위관료→김앤장 고문→법무부장관 등등. 경비업 영역에서는 경찰 고위간부들이 퇴직 후 경비업체의 임원으로 취직하는 사례가 있다.

2. 현실적으로 치안활동의 상당부분은 경찰이 아닌 민간조직과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와 안전의 시장화.

3. 2000년대 초반 이래 경찰청은 민간경비를 경찰청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경찰 공공의 원칙'(=경찰권은 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적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이 관여하면 안 된다)상 경찰이 민간시설을 경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까지 국가와 독점자본의 유착이 심각하여 경찰이 이른바 중요산업시설을 경비하는 일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자본의 자립화가 뚜렷해지면서 경찰에 의한 경비업 무도 민간경비로 이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86, 88 올림픽은 민간경비업의 급성장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IMF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비업이 활성화 되었다.

* 1973년 청원경찰법, 1976년 경비업법 제정.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업도

특수경비업무(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경찰과 민간경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청원경찰이다. 청원경찰은 외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비조직이다. 박정희 정권(3공화국) 이후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산업시설 경비 활동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각각 1962, 1973년 청원경찰법을 제정하였다.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 청원경찰이다. 반면, 민간경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3. 일본에서는 1972년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¹⁾ 당시 법은 육성법이 아니라 규제법이었다. 1960년대 일본에서도 일부 업자가 노동쟁의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쟁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격렬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여기서 부적격업자의 배제 및 부적격한 경비업무의 역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업법 제정 움직임이 나타났다.²⁾

우리의 경우에도 모든 경비업자에게 검역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규정을 두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 제정에 관련한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래 비전문적인 영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경비업체를 양성하여 충기를 소지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경비업체가 제조업 등을 겸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적법한 단체행동에 경비원들을 구사대로 투입하여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사례가 많아 경비업체의 다른 업종 겸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경비업체의 겸영을 금지함으로써 영세한 경비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³⁾

4. 철거현장에서의 용역폭력과 경비업법 → 합동재개발 방식의 개발 이후 국가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됨. 1990년대 이후 물리력이 하나의 ‘거래되는’ 상품이 되고 있다.

II. 신자유주의와 안전의 시장화

1. 1990년대 중반부터 경찰청은 종래의 ‘방범’ 대신에 ‘생활안전’, ‘지역안전’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은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 혹은 시민의 힘을 동원하려는 데 있

1) 경비업 자체의 탄생은 1962년 경. SECOM 생김.

2) 세키구치 케이이치, 경비업이 시민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 21세기사회 디자인 연구, 2002, no. 1. 당시 일본 참의원 지방행정위원회에서의 의원의 질의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표현됨. 경비업법을 제정하면, ① 경비업을 공인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② 사설경찰적인 단체의 公然性을 인정해버릴 위험성이 있다. ③ 경찰의 지배 권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 측에서도 경비업을 ‘공인’하여 진흥할 의도는 없고, 법률을 제정하여 부적절한 업무를 억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경비업법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규제를 불가능케 하여 문제라는 식의 입장이었다. 위의 논문.

3) 현재 2002.04.25, 2001헌마614, 판례집 제14권 1집, 410, 422-422쪽.

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붕괴하는 데 새로운 커뮤니티는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면 결국, 그 역할은 경비업자들이 떠안는 것이 된다.

2. 2002년 경찰백서. “우리나라의 치안회복을 향하여: 强度가 심해지는 범죄정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 하에 경비업을 국민의 자주적인 방법활동을 보완·대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 ① 이제까지 경찰에 의한 경비업의 지도 감독은 경비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 총괄하는 의미)
- ② 최근의 치안정세를 고려한다면, 경비업은 범죄에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 ③ 향후, 방법시스템으로서의 경비업이 국민의 요구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비업의 마땅히 가져야 할 상태에 대한 법정비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
- ④ 국민과 기업, 자치단체 등이 경비업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절한 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선다. 생활안전의 강조는 일본에서도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촉진된 결과이다. 특히, 1994년 경찰법 일부 개정이 중요하다. 동 개정에서는 그때까지의 형사국보안부를 격상 경찰청의 선두 부서로 생활안전국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경찰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런 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범죄정세의 악화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에 따라 범죄정세가 악화될 것을 예상, 이를 막기 위해 경찰권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도 이에 끌어들이는 형태로 경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ex.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예상됨. 감시사회의 시작. 경찰 내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그 구조조정을 풀어서보면 이렇다. 냉전 체제 이후 군사와 치안 영역에서 위험유발자가 달라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이른바’ 테러범, 외국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홈리스(노숙자 포함)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들. 경찰은 ‘보다 고급’의 치안유지활동에 집중해야 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민간에 넘긴다.

5. 2003년의 ‘긴급치안대책프로그램’은冒頭에 경찰업무를 재검토라는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증가 일로에 있는 범죄의 수사, 형사사법의 정밀화, 각종상담 업무의 증가 등에 의해, 제1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경찰활동의 결과가 범죄역지 검거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무의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경찰활동을 추진해가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

민간기업도 경찰화 하면서 안전·안심을 시장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경비업의 육성과 활용"이라는 항목이 '범죄에 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시책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자주방범행동을 보완 혹은 대행하는 경비업을 경찰의 범죄억지대책체계 내에 적극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검정·교육제도의 활성화 등에 의해 경비업무의 종별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을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긴급지역고용창출특별교부금(기금)을 활용한, 경비업자 등에 의한 방법 패트roller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에서는 1972년 경비업법 제정 이래 경찰은 일관되게 경비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아 왔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

6. 한국 경찰의 경우는 어떠한가? 용역강제와 경찰의 유착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巨視的 상황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Ⅲ. 민간경비원의 법률적 지위 및 권한의 근거

1.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가 이 핵심영역을 타자에게 이양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컨대 범죄예방활동은 민간경비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지라도 범인의 체포나 범죄의 수사는 국가경찰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민간 경비와 국가경찰의 역할에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⁴⁾

2. 주택개발 현장, 공장은 사적 공간인가? 공적 공간인가? 양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즉, (반은) 공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간에서의 (질서유지) 임무가 오로지 민간 경비업체에 할당하는 것은 타당한가?

3. 민간 경비원의 법률적 지위 및 권한의 근거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하는 소유자의 권한에서 나온다고 이해되고 있다.⁵⁾ 민간경비의 헌법적 한계를 논의하려면 당연히 소유권의 한계를 생각해야 한다.

→ 경비업자는 국가권력(고권)을 갖지 아니한다. 경비업자에 속한 자는 다만 경비를 요청한 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⁶⁾

4. 소유·소유권을 법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 1970년대 독일의 주택점거운동과 소유권(Eigentum), 가택권(Hausrecht), 관리권의 문제.

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홍정선, 경찰행정법, 165쪽.

5)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9쪽.

6) 홍정선, 경찰행정법, 165쪽.

일본에서도 민간경비원은 일반인으로서의 지위 이상의 특권, 권한, 그런 게 없다. 민간경비원의 법집행권한은 일반인의 재산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에서는 순수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⁷⁾

용역강제의 법적 외피는 민간경비업자인 경우가 대부분. 현상적으로는 private-public-partnership과 관련된 쟁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결국 사회권 영역에서 공권력의 역할, 소유권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 즉, 공장을 사유화되고 경제적 이윤의 관점에서만 정의되는 법적 공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유(집회의 자유, 노동3권)를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택소유자의 민사상의 소유권이 거주민의 헌법상의 주거권을 누르는 상황, 공장주의 민사상의 소유권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누르는 상황에서 용역폭력은 발생하고, 그 폭력을 국가가 비호하는 국면이다.

5. 사인에 의한 위험방지가 국가적으로 허용되는 전제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법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상 허용되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근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데 있다.⁸⁾

민간경비업체 직원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권한)는 크게 보아 두 개의 근거로부터 도출된다. 첫 번째 경우는 누구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리력(강력, 폭력)의 행사는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즉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누구든지 현장에서 붙잡은 범죄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억류할 권리도 있다. 물론 경찰에 적용되는 비례원칙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두 번째 경우는 가택권이다. 다수의 ㅁ 공공장소에서 민간경비원들은 가택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가택질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리력의 행사-예컨대 상대방을 그 공간에서 끌어내는 것-는 비례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치단체 중에는 공공장소(예컨대 공원)에서의 금지사항집행을 민간경비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경찰과는 분명 구분된다. 그들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신분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색한다든가 나아가 사람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 물리력의 사용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그 경우에도 항상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6. “영리기업인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한 주체로 참여시켜 과연 효과적인 사회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⁹⁾ → 경찰업무의 보편성과 안전영역에서의 양극화 문제이다.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위험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7) 김재광, 85쪽.

8) 홍정선, 경찰행정법, 164쪽.

9) 김재광, 31쪽.

IV. 사적 폭력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 상대방으로서는, 대개의 경우, 민간경비업체 직원의 물리적 행사에 맞서는 게 경찰의 그것에 맞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불분명하고, 대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 거니와 그런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행위를 한 당사자를 고발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체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당해 회사의 단기존속으로 인해 고발을 통해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경찰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경찰, 법원 및 민간경비업체의 협력이 점점 긴밀해지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가려내려는 관심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집행유예 아니면 개인 직원에 대한 벌금형만 선고될 뿐이다. 물론, 오래 걸리는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그 직원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만 뒤이다.

2. 현상적으로만 보면 정책대안은 경찰의 감독권한 강화와 불이행시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것, 감독기관이 행정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 주장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관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경찰 눈앞에서 용역폭력이 벌어져도 수수방관하는 경찰을 놓고서 감독 및 교육책임을 말해야 하는 상황은 난감하다.

3.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재산이 아니라 자유와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0. 들어가며

개발 현장에서의 용역 폭력은 참으로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 누구나, 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데도 여전히 개발 현장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각한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증언대회를 열어왔는데도,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폭행 사건만을 본다면,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용역 폭력의 문제는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드물어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은 사람을 때려눕혀 화염방사기를 쏘거나 각목에 못을 박아 휘두르거나 여성의 속옷을 다 벗겨 연탄재를 뿌리는 것처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폭력은 그리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한 지역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10여 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격전이 일어났던 과거에 비하면, 충돌이 그리 잦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용역폭력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철거민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철거민이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는 억울해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사회가 주목해왔던 것들을 보는 것으로 그 '똑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 정말 들어야 할 얘기를 놓치고,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철거용역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모색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개발주의의 한길로 달려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군사독재 개발주의에서 민주화된 개발주의로, 근대국가의 도시화에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로, 개발의 양상과 목표는 변해왔다. 이것은 여

전히 혼종적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역 폭력의 양상도 달라져 왔다.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여전히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나누기 위한 이야기꺼리를 풀어 놓으려고 한다¹⁰⁾. 용역폭력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 용역 폭력을 양산한 개발의 역사

“이나마 판자조각이라도 없어도 당장 한테서 자야 하는 저희들의 신세고 보니 사정도 해봅시다. “아저씨, 제발 우리가 뜯을 테니 부수지 말아요.”하고 두 손 모아 애타게 애원하지만, “높은 사람이 위에서 보고 있으니 곤란하다”면서 사정없이 부숴버리는가 하면 방구들까지 곡괭이로 마구 파버리고 갑니다.” (1975, 중랑천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개발은 시작되었다. 1962년 ‘도시계획법’은 당시 급속하게 도시로 유입한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심이나 부도심의 구릉지나 하천변을 대상으로 했다. 소위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밀집한 무허가정착지의 집들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다.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시작해, 공공이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증·개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다시 어딘가에서 무허가정착지를 만들고 또 다시 쫓겨나는 과정의 연속이 1970년대까지 이어진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수십 번 찾아가고 시청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딱한 사정 좀 들어보라고 어쩔 수 없이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갖은 수모와 구타 심지어 머리가 찢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의사회 구현이 이런 겁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생명이라고 살아 보려고 바둥대는 우리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호화 아파트를 짓고 그 돈으로 공원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란 말입니까?”(1985 목동, 신정동)

전두환 정권은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민들과 직접 마찰할 일이 줄어드는 동시에 세수를 확

10) 이 글에 인용된 증언들은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인터뷰한 것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의 증언이 담긴 다음의 자료들에 실린 것이다.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축약하거나 보완한 부분이 있다. 아래 자료 외 명동2구역과 부천 중3동 증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인터뷰한 녹취록을 이용했다. 연도는 증언이 채록된 시기, 장소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지역명이다. ‘(…)’은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철거민이 본 철거」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2008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09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2011

보할 수 있었다. 정비 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건설사들은 합동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주민들 역시 개발수익을 나눠가지기 유리한 구조이므로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철거민들의 싸움은 주로 주거세 입자들에 의해 전개된다. 지금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재개발 방식인 합동재개발은, 사실상 개발 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식이었다.

“굴비 엮듯 세워진 저희들의 생활이 그나마 폭풍과 비로 망가지고 아이들이 병든 몸으로 밤을 노상에서 지새다 보니 처음엔 이렇게 견뎌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긋지긋한 가난을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는 악에 가까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보도들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저희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해주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준 것처럼 보도하고, 더욱 더 기가 찬 것은 저희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투기꾼이라면 어린 자식새끼 옆에 두고 빗 속에서 병을 앓아가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1990, 서초 3동)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으로 급속하게 형성된 유희자본들이 부동산시장에 더욱 투입된다. 민주화 항쟁이 무너뜨린 군사독재적 개발 국가의 자리를, 민주화된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차지하게 된다. 민주화항쟁은 주택 정책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와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고 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도 법으로 보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미해당자’ 문제가 발생했고 가옥주들이 가옥명도를 통해 미리 퇴거시키는 문제로 세입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에 의한 강한 투쟁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개발 사업에서의 철거를 철거업체가 대행하게 되면서 철거용역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각축하던 업체들 중 적준이 업체를 거의 장악하고 이런 상황이 1990년대 내내 지속된다. 이 시기 형성된 비닐하우스 촌이 개발 반대 투쟁에서 주요한 무대가 되었고 끊임없는 개발로 서울시의 ‘마지막 달동네’들은 하나둘 사라져갔고, 건설업은 더욱 비대해져갔다.

“2005년에 개발 얘기가 있었지만 장사를 일단 해야 드문 드문이라도 먹고 사니까. 그리고 물 건들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복귀시켜 놔는데 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강제 퇴거 부분이 이루어졌고, 천막 강제 철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벌금들이 날아오게 되어버린 것이죠. (...)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거기 주거의 공간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은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주거의 공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계 부분에 대한 가계 부분에 대한 문제도 먼저 챙겼어야 되는 것이 일단 원칙인데 이 원칙들을 다 무시하고 한 번에 밀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고, 인제, 많이 다쳤어요.” (2010, 일산 덕이)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건설업의 적절한 구조조정을 유예시켰다. 김대중 정권은 오히려 건설 경기 부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각종 규제의 완화책을 쏟아낸다. 노무현 정권 들어 기존의 도시재정비사업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체계화되었고, 이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등의 이름을 붙여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대대적인 지역 개발을 부추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특성화'된 개발을 부르짖었고, 토건연합의 견제함을 확인시켜주었다. 그 와중에 서울에서 뉴타운이 시작되었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뉴타운 붐이 일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이어받아 한강르네상스를 표방했으나 이미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주거지 개발이 아닌 상권 개발이나 업무지구 개발이 많아지면서 상가세입자 보상 문제가 점차 쟁점이 되어갔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나타난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적어도 과거의 재개발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토지의 공공적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개발은 오로지 도시 경관 조성과 공간을 통한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환된다. 또한 1990년대 말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관련법들이 제·개정되면서 한국에서도 부동산의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05년 이후 부동산건설부문에 대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은행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2010년 6월말 총여신의 7.7%를 차지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도 부동산 금융화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다. 이제 '복부인'은 없고 '현명한 투자자'이나 '잠재적 피해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에서 아찔한 곡예를 하게 된다.

2. 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용역업체

1) 돈 놓고 돈 먹기 개발

이와 같은 개발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국의 개발 사업의 특성이 형성되었다.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시행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재원의 조달 역시 공공에 의한 투자는 거의 없다.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은 관리처분이나 환지와 같은 분양 처분 방식이고 정비사업의 방식은 대부분 전면 철거 재개발을 선택하고 있다. 돈을 놓는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또는 조합), 건설사다. 금융권은 조합의 차입을 통해서나 직접 투자를 통해 돈을 놓는다. 이런 구조 안에서 정작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삶이 고려되기란 불가능하다. 이것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개발은 공익성이나 공공성과는 무관한 돈 놓고 돈 먹기 투자 사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이 돈을 먹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개발 사업 계획이 알려지는 순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 년 후의 돈 먹기가 보장되지만 이것은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현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래서 개발의 속도는 개발 이익에 직결된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 일반분양분에 의존한다.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것이 투자자들이 나눠 먹을 파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개발 사업 계획에서 임대아파트를 더 짓거나 적정 주거 면적을 고려한 소형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아 주거안정성을 해치고, 용적률 상향 등의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되어 도시 전반의 거주 환경을 해치게 된다. 또한 개발 이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 사업의 계획에 이견이 있는 주민들은 제압되어야 하고, 마지막까지 협의를 원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2) 건설사의 지배력

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는 하나의 투자자일 뿐이며,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수주 받아야 하는 위치이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사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동등하게 자신의 자산을 투자해 사업에 참여하지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부분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단기간 안에 사업계획의 적절성이나 효과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정비업체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 등을 지원하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 건설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조차도 개발 사업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2005년 이후로 개발 사업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증한 이유가 그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가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을 통해 은폐되거나 상쇄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물론 아예 돈을 놓을 수도 없었던 세입자들은 언제나 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입어 왔지만 소송을 걸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지위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므로, 최근의 소송 건 수 급증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설사의 절대적인 지배력조차도 불안정한 시장 안에서 흔들리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철거용역업체는 건설사의 지배력을 현실화하는 손발이었다. 철거업체는 시공권을 가진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철거업체가 모든 권리분쟁이 종결된 후에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분쟁 자체에 개입하고 주민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개발현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철거업체의 '상품'인 것이다. 과거 개발 현장에서 악명 높았던 '적준용역'이 해체된 이후 십 수 개의 철거용역업체가 재개발 현장을 분점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경쟁력은 철거업 자체가 아니라 거주민들의 빠른 퇴거에서 비롯된다. 또한 부동산·건설부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건설사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업체'들이 개발 현장에 개입하게 된다.

3) 시장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개발 사업의 종류는 매우 많다. 건설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매우 넓은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같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활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돈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지역이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별 매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거나 하는 등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 각종 업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는 알 수 없다. 대개는 해당 구역의 소수 주민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추진위 설립 이후 계약을 따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정도로 파악된다. 이 단계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발의 추진 상황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막연한 수준으로만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진행 중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돈 놓은 자리가 마련되면 돈이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단계다.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까지 정비업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정비업체는 전국적으로 36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25개 업체 정도가 각각 20개 이상의 현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시공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정비업체 역시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 OS업체라고 불리는 용역업체가 들어와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다.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의율이 달성될 때까지 주민들을 만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동의를 얻기 위한 과장된 정보가 유포되며, 현금이나 선물 등을 지급하며 주민들을 회유한다.

조합이 만들어진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조합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성 커녕 손익 계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지자체의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반대하는 세력이 가시적이고 의견이 강한 경우에는 경비업체가 총회장을 경호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안전을 통과시킨다. 안전 통과에 대해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나마 이런 경우는 조합이 있어서 형식적으로나마 조합원 동의절차가 있는데,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주민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 알 길조차 없다. 그러나 조합 역시 차입금 때문에 시공사에 종속되기 쉬워, 결과적으로는 이미 이 단계부터 시공사가 원하는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봐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참여자들의 수익 또는 부담금이 확인되는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야 뒤늦게 후회하는 주민들이 나타나게 된다. 조합원들의 경우 주로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불신하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세입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대책이 제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들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의 실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민간개발 등 법이 정한 보상 자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세입자도 있고, 법에 따라 이주대책이 제공되는 사업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요건(구역 지정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계속 거주 등)을 만족하지 못해 대책을 제공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있다. 또한 보상이 되더라도 도저히 재정착이 불가능

한 수준의 보상인 걸 확인하게 되고 강하게 저항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상가세입자들의 저항은 영업손실보상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때 주민들은 구청에 항의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거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구청은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소송 자체가 사업 진행을 막을 힘은 없어서 권리 회복이 불가능한 시점에 판결이 나기도 한다. 최근 건본주택까지 전시된 정금마을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무효였다는 판결이 났지만 주민들은 모두 떠난 상태였다. 또한 설령 신속하게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단계만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바로 전 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 공동체는 거의 파괴된다.

이렇게 개발 사업의 추진에 저항하는 주민들은 협의할 기회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을 견디며 맨몸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관리처분 인가를 전후로 용역업체가 현장사무소를 열면 눈에 보이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4) 철거업체의 핵심 업무는 '이주관리'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은 해당 구역 안의 주민들을 재빠르게 이주시켜야 하며 철거업체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철거를 마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주는 통상 8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끝내는 것으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이주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주나 철거가 늦어지면 사업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가 빠른 이주와 철거를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런 일들을 철거업체는 '이주관리업무' 또는 '이주촉진업무'라는 이름을 붙여 수행한다.

조합은 우호적이지 않은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미리 걸어 퇴거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최근에는 철거업체에서 법대 출신을 고용해서 명도소송 관련 업무까지 지원하기도 한다고 한다. 명도판결은 건물에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소유자에게 인도하는데에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소송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것이 전부이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점유자가 항소를 할 수 있지만 가집행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퇴거가 가능해진다. 과거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은 매우 적은데 이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집행의 권원을 확보한다. 물론 점유자의 퇴거는 '대집행'될 수 없다는 쟁점이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명도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사무소가 지역에 들어오면 용역업체 직원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동네를 배회하거나 오물 투척, 영업 방해 등으로 주민들을 괴롭힌다. 이사를 나간 주민들이 많아지면 빈집의 철거나 철거예비행위가 시작된다. 철거예비행위는 건물을 철거하지는 않지만 반파하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수도, 전기 등을 끊거나 하는 방식으로 남은 거주 세대를 위협하는 행위다. 빈집 철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거주환경이나 상권을 파괴하고 남은 세대들에 대한 시위 효과도 있다. 이때 철거용

역업체는 협박이나 폭행뿐만 아니라 회유책을 동원해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하는데 주민들의 재정착과 관련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폭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하나둘 이주해 나가는 동안 대체로 판결이 끝나 있기 때문에 남은 세대를 대상으로 강제퇴거가 시도된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집행관들이 용역들과 함께 수행한다. 퇴거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철거용역업체가 함께 현장에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퇴거를 집행하는 이들과 철거용역업체는 구분되지 않는다. 실제로 용역을 모집하는 과정도 사실상 철거업체의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철거업체의 정직원은 주로 영업직의 10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철거를 집행할 때 동원되는 이들은 일용직의 형태로 모집하게 된다. 이때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각종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체대생 등이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명도집행을 할 때 철거민들이 저항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해두기 때문에 철거민들이 경찰에 의해 진압되기도 한다. 이제 과거보다 훨씬 적은 물리력을 사용해도 손쉽게 강제 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5) 업체가 사라져도 시장은 남아

이 모든 과정이 건설사의 시장이자 철거업체의 시장이 된다. 철거업체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종결자였던 것이다.

철거용역업체의 시초인 (주)입산에서 철거용역업을 시작한 일부가 1990년 (주)적준개발용역을 만들고 1994년부터 재개발 현장을 거의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극악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면서 1998년 다원건설(현, (주)다원이앤아이)로 이름을 바꾸고 2000년대 들어서는 십 여 개의 철거업체가 경쟁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주)다원이앤아이는 여전히 독보적인 철거업체이며, 다원에서 분화한 (주)참마루건설을 비롯해 (주)삼오진건설이 1위를 노리는 업체, 그 외 호람건설(주), (주)대길공영, 유에스건설(주), (주)비조이엔지, (주)우진미래로개발, 백주건설(주) 등이 개발 시장을 장악한 주요 철거업체다. 이들은 대개 특정 시공사와 어울려 개발 현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다원-대림, 삼오진-지에스, 유에스-삼성, 백주-동부, 참마루-한화 등) 모든 개발 현장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철거업체는 약 2만 평 정도의 개발 사업에서 철거업무를 수주하면 6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하며, 용산참사 이후 위험 비용이 추가되면서 철거비가 더 인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공사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어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경영상태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며, 그래서 더욱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철거업체들이 개별 개발 현장에 개입해 계약을 따내고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철거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인데 이들은 건축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석면 처리,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며 개발 사업 관련 이권을 확보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호를 변경하거나 해체하고 다시 등

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개발 현장에서의 용역폭력을 특정 업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 접근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3.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닌란 말인가

1)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차에 실려

“당시 세대위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았는데, ”거기는 강패집단이다“, ”거기엘 가면 조합에 밍보여서 공공임대 넘버에서 제외된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한다“, ”여러분의 귀한 돈을 회비를 받아들여서 착취를 한다“는 등 온갖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더구나 한 동네 살면서도 누가 세입자인 줄 몰라.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대위 가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1998, 무악마을)

“2007년 8월달쯤 감정평가사 그 사람들이 와서 알았죠. 감정평가 하는 사람이 공장이니까 많이 나올 꺼다 얘기했거든요. 많이 나올 꺼다 하고, 얼마 금액은 얘기 안하고. 그때는 받아들일겠다고 얘기했죠. 실제 보상금을 들은 건, 작년 가을 정도 될 거예요.” (2009, 용산4가)

“그냥 플래카드, 조합에서 지네끼리 인가 났다고, 이렇게 막 써 붙여 놓은 거 그거 보고 (사업 인가가 난 길) 알은 거예요, 저희는.” (2011, 일산 덕이)

“무슨 법에 근거를 하나 했더니 무슨 법 무슨 법 해요, 근데 그거 다 일일이 볼 순 없잖아요. 법 하나가 이렇게 두꺼운데 용어도 법적인 용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 어떻게 정보 공개 청구 하는지도 몰라서 트위터에 어떤 기자님 글 보고 했더니 안돼서 멘션 보내고 통화하고, 수수료도 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그랬었죠. 민원 답변 안 오면 구청 쫓아가야 하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 답답하죠. 명도가 뭔지도 몰랐고.”(2011, 명동2구역)

철거민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개발의 마지막 단계까지 떠밀려 온다. 자신이 적절한 재정착 대책을 받지 못한 채 이주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해도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조합이나 구청, 어디에서도 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법이나 제도 이름을 겨우 알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싸워야 하는지 기다리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낯선 상황을 맞게 된다. 이때쯤 동네에는 대책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지지만 철거민단체

에 대한 오해와 악성 루머들 때문에 모임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2) 봉쇄된 협의 기회

“조합이 우리한테 다음날 공사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조합이 우리랑 협의할 의사가 없나 보다고 생각했지. 다음날 우리가 사무실에 모여 있는데, 장애인들이 죽 올라오더라고. 개네가 성북시장에도 투입됐던 용역들이야.” (1998, 정릉4동)

“통보 왔어요. 언제쯤 왔더라? 나왔어요. 그리고 빨리 이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확정금액을 정해주고 이사를 해라, 조합에 와서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가라 이랬어요. 한 달, 통보해주고 한 달. 7월달 즈음 해주고 8월 30일까지 이사하라고 팻말에 써있었어요.” (2009, 용산4가)

“그 해 12월,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명도소송장 받아들고, 어 이거 팔렸네, 이래가지고서 우리 건물주한테 연락을 했더니 나는 끝났다, 나한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세입자 몰래 그 따위로 행동할 수 있느냐 막 따졌지요. 암튼 매매하기 전부터나 매매 과정에나 우리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2011, 동교동 두리반)

“4월말에 통고서 보내면서 5월말까지 나가라고 해서, 우리는 이대로는 못 나간다고 한 번 보내고 5월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당신들 우리 생존권 짓밟는 거 우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보냈고. 6월 8일쯤 시행사에서 4구역 세입자 중 일부한테만, 전체 다도 아니고 일곱 집인가 내용증명 보낸 거예요. 6월 9일 만나자고.” (2011, 명동2구역)

이주는 일방적으로 통보된다. 이 단계까지 오는 동안 성실한 협의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합원인 경우 조금 더 일찍 협의할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관리처분계획이 나온 이후다. 어떤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재정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방법도 없고, 협의할 여지도 없다. 간혹 협의하자는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철저히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남아 있는 거주민들의 단결을 해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재정착 대책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먼저 이주하는 사람들이 떠날 곳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남는 경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한 싸움이고 불확실성이고 수모와 폭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 없는 게 죄, 모욕하는 사회

“온갖 욕을 다 들었죠. 도둑년이네, 누구 피 빨아 먹는 년이네, ‘세입자 새끼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는 소리도 듣고. 가슴에 응어리가 너무 많이 졌어요. (...)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태

어나기 전부터 가옥주였다. 누가 없는 집에서 태어나라고 그랬냐고. 재개발하기 전에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렀지, 가옥주와 세입자라고 나뉘지지 않았어요.” (1998, 도원동)

“종이 한 장으로 나왔죠. 내용증명서로.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적어도 찾아와서 여차저차해서 임대차 계약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내용증명서 하나 보낸 거예요. (...) 상권이 너무 죽으니까 사람 있을 땐 철거하지 말라고 하니깐 나중에 다 영업 안 된 거 보상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양아치냐고,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애네들이 우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되고, 우릴 사람으로 봤으면 어떻게 종이 한 장 보내서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 할까, 어떻게 당당하게 보증금 줄 테니 꺼지라고 얘기 할까, 그런 거에 이가 갈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커요. (...) 적어도 용역들한테 욕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내 가게 지키는 건데.” (2011, 명동 2구역)

남아 있는 거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 상황들에 부딪치게 된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주하지 않는 거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욕설을 퍼붓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아무 것도 알 수 없고 아무 것도 혐의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다.

4)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저는 딸만 둘 있어요. 적준 애들이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나보다도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많이 불안했었어요. 우리 큰 애가 재수하느라고 독서실에서 2시, 3시 돼서 오니까 그때까지 잠도 못자고 기다렸다가 데리러 가는 거지. (...) 그 당시에는 잠도 못 잤어요. 머리 위에다 모자랑 장갑, 운동화 다 놔두고 자는 거야. 언제 뛰쳐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오죽하면 자명종 시계소리를 싸이렌 소리로 잘못 들을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어. 우리 남편이 술 한 잔 먹고 누구야 하고 부르면 적준 애들이 와서 소리 지르는 줄 놀라고. 내가 그때는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에 매일 술을 마셨어.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동료들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그 불안감을 감추려고 술을 먹은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 뛰니까.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지.” (1998, 미아6동 돌산마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집에 가서 불을 켜니까 형광등 천장에서 물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서워서 그때 그냥 바로 이사 나와 버렸어요. 너무 겁먹어서... 우리 아래층에 지하에 사는 사람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보일러를 뜯어가지고 물이 수도꼭지에서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임대아파트를 꼭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물이 새고 전기가 불날까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일부러 빨리 나가라고 집을 아예 다 미는 것도 아니고 들성들성 부숴놓고 그림을 막 이

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칼 그림 그려놓고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냄새나는 거 갖다가 퍼놓고,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 쓰레기를 이만큼 쌓아놓고.” (2009, 용산)

“철거민들이 지금 우리뿐이 아니잖아요. 강제철거 구역이 와서 두드려 패고 그런 걸 보면 솔직히 살고 있어도 항상 불안해요. 나가서 살 곳도 없지만 나가라고 하니 솔직히 그 돈으로 나갈 수 없고 사글세도 힘들고. 나이도 들어서 벌이도 없잖아요. 사글세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주방에서 일이라도 해야 하고. 제일은 상도 4동처럼 구역 써서 사람을 내쫓을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해요.” (2011, 화곡동)

“제가 세입자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이 짝 깨물고 눈 감고 구역하고 열 번 부딪히는 끝난다 생각하시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말도 못 하죠.” (2011, 명동2구역)

일부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용역업체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철거예비행위들도 벌어지고 골목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다. 한두 번 충돌이 있고 나면 공포나 불안은 더욱 직접적으로 거주민들을 옥죄기 시작한다. 그리고 구역 안에 용역업체가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서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5) 경찰은 방치하거나 잡아가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병력을 투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강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설치도 비호해 줍니다. 그런 강패들은 죄가 없고 생존권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화염병을 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까? 현장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 철거민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선경건설에서는 경찰조서에 철거민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합니다. 정확히 수사를 해야지요. 그래야 민중의 지팡이지요.” (1997, 전농3동)

“갈비뼈가 나가고 워커발로 밟히는데 경찰관들은 안 말렸어요. 모두들 뺨 둘러보고만 있더라고요. 경찰보고 뭐하느냐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경찰관은 말리는 게 아니고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을 하는 거지 남 싹 말리는 게 경찰관인 줄 아냐고.” (2011, 광명6동)

“한번은 경찰에게 여기 좀 순찰해 달라고 했다. 용역들이 바로 옆에 있고 가로등도 없어서 너무 무섭다, 죽어도 모를 거다 하면서 순찰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하는 말이, 이사를 가면 되지 왜 여기서 사냐고 한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보상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걸로만 안다. 경찰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다. 보상 한 푼도 없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 (...)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일을 당하다 보니, 그쪽에서 발뺌을 해서 미뤘는데 며칠 전 포크레인 기사

진술 녹음을 했다. 고소고발 예정이다. 초기에 하면 좋았을 텐데 증거도 없고 발뺌을 하면 그 만인데, 고소하려면 상해진단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몇 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하지 못했다.” (2011, 부천 중3동)

“어머니가 넘어지실까 안으려고 다가섰는데 갑자기 남자경찰관이 뒤에서 안고, 순식간에 넘어 쓰러지고 바닥에 엎어놓고 머리채를 잡아 목을 꺾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머니를 연행 못하게 하려고 떼어놓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절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꺾고 하느냐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2011, 일산 덕이)

철거민들은 불안해서 순찰을 요구하거나, 상황이 발생해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필요에 의해 경찰에 연락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치안조차 게을리 한다. 마치 자신들이 책임질 영역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개발 구역을 용역깡패들의 관할로 넘기는 것일 뿐이다. 또한 개발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저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철거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것 역시 여전하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직후 ‘사인 간의 관계에 공권력 개입’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일면적 비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찰력이 어떻게 개입하며 어떻게 불개입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편, 철거민들은 주로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해 고소고발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우르르 몰려다니는 용역업체 직원들 중 가해자를 특정하는 문제에서부터 분명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고소고발의 비용도 많이 들어, 이미 경제적 압박을 받는 철거민들은 용역 폭력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반면, 시행사나 시공사, 용역업체 등에서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게 되고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죄 등까지 포함해, 오히려 철거민들을 연행한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철거 투쟁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수 등(2011 국정감사 장세환 의원 자료실, 용산참사 관련 건 제외)을 비교해보면, 현실을 볼 수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철거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신고 건 수는 모두 29건이며 용역업체 직원이 고소고발 당한 건은 모두 14건에 그친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에 대해, 철거민 202명(25건)을 검거했고, 용역업체 직원은 16명(8건)이 검거되었다. 기소율 역시 철거민 80.2%, 용역업체 직원 62.5%로 차이가 난다.

6)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도

“애들만 있는데 와서는 이불 하나를 꺼내서 마당에 퍼 놓고 그 위에 살림을 다 내놓았어요. 내가 우리집 부서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니까 애들이 내복 바람으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 손때 묻은 살림이 그렇게 내팽개쳐지는데. 근데 다음날이 월요일이

니까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 책가방이랑 책이라도 챙길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가방 챙기러 방에 들어가는데 누가 창문으로 돌을 던지더라고. 강제 철거하던 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이틀 후에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1998, 도원동)

“우리 집 철거할 때는 판결 선고일이 2008년 11월 21일이었거든요. 우리가 법원으로 간 사이에 다 강제철거 하고, 집기를 실어가 버리고 펜스 문을 딱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집을 영영 못 봤어요. 그날 아침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다 부숴버린 거죠.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는 선고가 28일로 연기됐다고 했어요. 선고가 연기됐는데 21일 날 다 부숴 버린 거죠. 며칠 뒤에 대집행 취하서가 날아온 거예요. 다 부숴놓은 다음에 취하서를 내면, 그러면 부순 데에 대한 죄가 있는 거 아닌가요?” (2011, 광명6동)

“새벽 6시경 조합에 사람들이 모였다. 벼룩시장 신문 가지러 가는 척 하면서 조합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라. 그런데 렉카차가 왔다. 순간 렉카차가 우리집 쪽으로 오는 것 같아 상공조직부장에게 전화한 후 집으로 오는데 용역들이 차에서 내리더라.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집 문만 막으면 될 줄 알고 막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용역들이 밀고 들어와 나를 들어서 밖으로 들러나왔다. 나올 당시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점퍼는 다 벗겨지고 안에 티셔츠까지 위로 올라갔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용역들이 막고 서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후 천막을 바로 쳤는데 입원한 동안 천막도 부숴버렸다.” (2011, 부천 중3동)

그러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명도집행은 그 구체적 절차나 요건에 대해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언제 나를 끌어낼 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끌어내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강제퇴거를 당해야 하는 것이 철거민들의 상황이다. 동절기나 야간, 새벽 등 금지되는 시기에 대한 규정도 없고 폭력 금지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다. 명도집행은 점유자를 끌어내 부동산을 소유권자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명도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렇다 보니 개발 현장에서의 강제퇴거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 판결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점유권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시행사는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점유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중지된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걸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관련법이 보장하는 대책이 제공됐는지만 확인한 후 명도판결을 내린다.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법의 불합리함을 따져볼 여지는 사라져버리고, 철거민들은 집을 잃게 된다.

7) 법이 끝내 외면하는 재정착의 권리

“행당 1-2구역의 쟁점은 사업 결정고시와 사업 시행인가일의 기간 차이가 무려 8년 8개월이라는 행정적 오류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90% 이상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 자격이 없는 비해당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20여개월 동안 철거용역(적준)과 30여 차례나

충돌이 있었다.”(행당동, 「철거민이 본 철거」)

“공람공고 이전에 설계를 내서 건축허가가 난 곳은 그 이후로 다 지었어요. 지어서 준공을 낸 사람도 있고, 준공을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었으니까 세입자들 들인 거죠. 세입자들은 모르고 들어온 거고. 그런데 들어와서 건축 대장을 보면 그 건물 자체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무허가로 지은 거고, 무허가는 보상이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당하는 사람들.”(2011, 위례)

“2008년 11월 세입자대책위 결성했다. 2008년 9월부터 집주인들이 이사 나가라고 해서 변호사도 찾아가봤지만 대책 마련이 없다고 해서 근처 약대동 철거민 소개로 전철연 알게 돼서 전철연 설명회를 통해 가입하게 됐다. (...) 세입자 관련 공고는 전혀 없었다. 여기는 다른 개발과 달라서 이주비도 없고 보상 없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다. 처음엔 세입자대책위 같 생각도 안했다. 혼자서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재개발 뭐라 해도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살겠지 생각했지, 이렇게 아무 보상도 없을 줄은 몰랐다.”(중3동)

“도정법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들이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사비용 삼백만 제시해도 삼백만 원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두리반으로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덩어리에서 철거당하면 그런 알팍한 보상이나마 있고, 작은 덩어리에서 철거당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법, 니네는 그걸 법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악랄한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라고 선언을 한 거지요.”(2011, 두리반)

“보증금이 4천만 원에 22평짜리 26만 7천 원. 근데 그 금액을, 이십 얼마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가스비 등 공과금 하면 한 50만 원 넘어갑니다. 누가 들어가 삽니까? 그걸 제시를 했어.”(2011, 위례)

“어떻게 우리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처음에 통보서 받고 인터넷 뒤지고 관계법령 보면서 밤 샌 적도 있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모르면 눈뜨고 당하니까. 개발 관련 법이 많은데, 다 개발하는 입장에서 만든 법이라, 원래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하나도 없어가 지고 너무 사각지대라.”(2011, 명동2구역)

세입자 등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십 년 사이에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세입자에 대한 방한 칸 입주권에 이어 1989년 임대주택 입주권 보장, 가이주 단지 등 철거민들의 투쟁은 소중한 결실을 맺어왔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투쟁은 멈출 수 없었다. 언제나 법 밖에 방치되는 철거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미해당자’, 개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있거나 없거나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세입자대책과 보상, 해당자가 되더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

할 수 없는 사람들 등이 늘 있어왔다. 쟁점이 되는 제도와 정책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법도 거주민들의 재정착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개발과 관련된 법들은 매우 많다. 다양한 개발 사업의 종류와 절차를 다루는 법만 해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주택법(지역주택조합사업),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전통시장및상점가옥성을위한특별법(시장정비사업) 등이 있다. 그냥 건축법에 따라 대규모의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한 개발 사업을 규정하는 법률들도 있다. 흔히 ‘개발 사업’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평택 미군기지와 같이 대규모 강제퇴거를 발생시키는 사업들도 있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상이나 세입자대책은 대체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민간개발은 시행자에게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게다가 가장 의미 있는 세입자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재정착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개발 사업에 대해 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우선 공급 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법도 거주민들의 재정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철거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짙짙 개선되어 온 세입자대책들은 언제나 또 다른 철거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개발 사업으로 내몰리는 철거민들 중 가옥주들은 그래도 법으로 다뤄볼 여지가 있었다.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이 재산이라면 그것의 본질은 누군가 밭 뺏고 누울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법은 소유 여부만을 판단하고 주거권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점유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의 점유의 존속, 함부로 내쫓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퇴거가 요청될 때에는 재정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한국의 법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안에서 명도판결은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이 될 뿐인 것이다.

최근 상가세입자들의 투쟁이 많아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거주민의 재정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만 보상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와 같은 요소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용산참사 이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커녕 미봉책도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8) 지자체의 부작위

“조합설립을 허가해 주는 곳은 해당 구청이다. 따라서 구청에 일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만약 조합원이 6백 명이라고 하자. 이들이 건설회사에게서 무이자로 5천만 원씩 이주비를 받으면 3백억이다. 1년에 10%로 이자를 따져도 30억이다. 1년 늦어지면 더 손해다. 30세대라면 한 집에 1억씩 돌아가는 돈이다. 건설회사는 나중에 건축비에서 빠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건 결국 조합이다. 구청장 정도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는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으면 구청장이 나서서 조합을 설득하고 세입자들의 요구를 중재해야 한다. 계산기만 두드려도 간단하게 알 수 있다.” (1997, 행당동 성폭행 피해자 법정대리인)

“얼마 전 동장이 바뀌어서 명도 당하고 동사무소에 갔었다. 도대체 내가 명도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냐고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얘기하더라, 다른 직원 한 명은 명도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말하더라. 명도당하고 반파된 곳에서 구멍 난 곳에서 아무 것도 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럴 수가 있냐, 물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그 곳에 사람이 사는지 몰랐다고 말하더라. 집에 구멍 뚫리고 해서 사람이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었다.” (2011, 부천 중3동)

“공공기관에서 방관하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무리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세입자들이나 살고 있던 주민의 권리가 침탈당할 때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 분쟁조정위원회 있대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 했더니, 만들긴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럼 분과위원회는 있냐 했더니 그건 없다고. 그러니까 개네가 세입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건 돼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사업 신청은 누가 했고, 계획은 이러저러하게 진행될 것 같고, 조감도라도 보내주고, 세입자들에게 언제부터 언제 기간에 이주대책 관련해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거나 청문회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가 개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민간이 하나까 인허가만 내준다 이런 거라서. 허가를 내주는 데 책임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2011, 명동2구역)

지자체 역시 다르지 않다. 명도판결의 전후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는 철거민들은 지자체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는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심지어 용산참사 당시 용산구청은 철거민들이 생떼거리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故 이상림 열사의 품에서는 “세입자 보상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을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용산구청의 공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설령 지자체가 개발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거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통해서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책임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철거민들은 지자체로부터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사이에서 삶을 파괴 당한다.

9)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제한과 박탈

“처음에는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에 물질을 좇아 달리는 엄마요 아내에 불과했어요. 근데 갑

자기 동네 재개발로 이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방을 얻으려고 돌아다녀보니까 재개발 때문에 주위 월세가 너무 많이 뛰었더라고요. 가장 없는 사람들이 월세를 사는데….” (1998, 무악마을)

“시택에서 쌀 가져와서 먹고, 시동생들도 생활비 보태주고. 친동생이 직장 다니느라고 올라와서 같이 살게 돼서 동생 신세 지고. 근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부부싸움도 많이 했지. 우리 전세금도 탄 사람보다 더 많고 집주인하고도 다툼이 별로 없어서, 내가 그냥 이사 가자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끝나면 다시 내 일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막상 철거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고, 건설회사도 부도가 많이 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1998, 무악마을)

“이비인후과 약 먹지, 정형외과 약 먹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다 토하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가 다 패였더라고. 그 독한 약을 두 가지나 먹어대니까. 그런데 아프니까 약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있어? 지금도 다리가 계속 걸리고 아프지. 다쳤으면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골병만 들었지 진단이 안 나오는 거야.” (1998, 정릉4동)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함부로 욕은 안하죠. 욕은 안 해도 어떻게 방해를 하나, 와서 앉아서 있어. 아침 점심 저녁. 막 젊은 사람 상대하듯이 욕을 한다든가 행패를 부린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무언으로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어보세요. 험상궂잖아요. 당신이 뭐요, 나가라고 해도 대답도 않고.” (2009, 용산4가)

“(이주한 분들은) 다 어떻게 반지하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사하신 분들이 또 다른 철거지역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가 싸니까. 세류동 쪽에 거기 다시 철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 동네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여기 가까이 반지하 이사 가서 월세, 솔직히 보증금 얼마 걸고 여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는 보증금 걸고 월세 35만 원씩 주고. 그럼 또 다시 그 사람들도 별 수 없이 또 또 그런 데 전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철거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2010, 신동마을)

“종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수많은 빌딩 중에 갈 데가 없어요. 괜찮다 싶으면 비싸거나 가격 괜찮으면 상권이 아니거나 재개발하거나. 또 다른 데 갔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2011, 명동2구역)

끝까지 남아 투쟁하던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약 없이 길어지는 투쟁은 철거민들의 생업을 파괴하고 포기하고 떠나면 더욱 열악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삶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다. 한국 정부 역

시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다. 그러나 법도 지자체도 경찰도 방치하는 개발 현장의 거주민들은 이와 같은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철거민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용역업체 직원들이겠지만 법과 지자체와 경찰의 부작위야말로 인권침해의 핵심적 요소다.

10) 역사와 공동체의 파괴

“며칠 있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애들 물건이라도 챙기려고 가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어. 다 집어갔어. 늦게 얻은 막내아들이 귀해서 애 아빠가 사준 자전거도 누가 집어갔더라고. 상창하고 트로피가 제일 아까워요. 추억인데. 그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뒤 돌아가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 갓난아기 때 입혔던 배냇저고리, 돌 때 입혔던 한복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구한테 하소연하느냐고.” (1998, 도원동)

“그 사람들은 집을 철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집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동안 내가 꾸려온 가정, 그리고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철거했어.” (2011, 신계동)

“예전에는 정자에서 다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먹고 하니 동네가 정겹고 살만했었는데, 개발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이 구청과의 보상 문제로 개별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서로 쉬쉬 하는 분위기가 돼서 하나둘 신뢰하지도 않고 떠나게 되었다. 이제는 쓸쓸한 동네가 되었다.” (2011, 화곡동)

개인의 건강이나 주거, 영업도 파괴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거주민들이 점유하던 장소는 그들의 삶의 그릇과도 같다. 그것이 모두 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개인들의 역사나 삶의 파괴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역마다 자라온 공동체의 역사와 기운을 모두 파괴한다. 이것은 ‘철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철거민 중에 자신이 철거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누구나 철거민이 되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를 둘러싼 지역 공동체는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용역 폭력의 엔딩이다.

4.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1) 용역폭력, 다르게 보기

이제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색해야 할 차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다음의 이야기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용역원 김(29)씨는 ”철거하러 오는 것인지 몰랐다. 일하더라도 즐거워서 하는 일이겠느냐. 우리도 껌껌하지만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며 눈길을 피했다.” (1996, 방배4동, 인권하루소식)

“저랑 엄청 싸웠던 애(용역)가 있었는데 우연히 성남 축구장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욱하던 애가 날 보고 누나,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철거현장 가는 게 제일 싫대요. ‘아, 우리집도 철거민이고’ 막 그래요. 개개인으로 보면…” (2009, 용산4가)

용역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언론은 가끔씩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그들’은 누구인지 추적한다. 오래 전부터 ‘그들’도 또 다른 빈곤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알바’로 분류하고 업체의 몸통을 추적한다. 조직폭력배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그 배경이나 계보를 파헤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그들’이 누군인지에만 주목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무엇이 ‘그들’과 ‘우리’를 폭력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지 살피지 않는 한, 누구든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명동 마리를 비롯해 유성기업, 포이동 등에서 용역폭력이 계속 문제로 드러나자 경찰청은 이전과 다르게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 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동대문 한 구역의 재개발 비리와 관련한 용역폭력에 대해 조직폭력배 190명을 검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금까지 ‘민사 불개입 원칙’ 등을 이유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것을 반성한다고도 했다. 용역 폭력의 유형과 대책을 분류하며 재개발과 관련된 용역폭력은 경비업체가 아닌 철거업체에 의한 것이라 ‘무허가 경비업’ 등으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한다.

강패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오면 처벌하면서도 개발 현장에 ‘업체’를 만들어 들어오면 처벌하지 않았던 경찰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경찰청의 입장은 진일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민사에도 개입’하겠다는 수준의 변화만을 보일 뿐이다. 용역폭력이 ‘민사’의 문제가 아니라 철거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사적 장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경찰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경찰청이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나 철거에 저항하여 시설·장소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켜야 하는 등 위험방지 활동을 위해”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 지금과 같은 폭력은 사라질 수 없다. 언제나 철거업체의 철거는 적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거민은 적법한 철거에 저항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불법이라며 방관하는 경찰에 의해 용역들의 손에 넘어가든 불법이기 때문에 연행하겠다는 경찰에 의해 국가형벌의 손에 넘어가든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

또한 ‘조직폭력배’를 소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도 한계가 있다. 개발 현장에 들어오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면 어쩔 것인가. 흔히 용역업체 직원들이나 개발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용역깡패’라고 부른다. 실제로 일부 조직폭력의 게보가 철거 현장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아마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깡패가 용역업체 통해 들어온다는 식의 이해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들은 폭력을 쓰며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기 때문에,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그 어떤 행위자들보다 직접적으로 철거민들의 인격을 모욕하기 때문에, ‘깡패’인 것이다. 만약 용역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려고 한다면, 용역‘업체’야말로 조직폭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체’와 각종 ‘업체’들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우리가 소탕해야 할 ‘조직폭력’이다. 개발 사업의 구조 안에서 이윤을 노린 ‘업체’들은 무슨 업종을 선택하든 조직폭력에 받을 담그게 되기 때문이다.

운동진영의 접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발의 한파에 밀려나는 철거민들은 언제나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억울함’은 켜켜이 쌓여 도시의 밑바닥을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으며 경비업법 개정이나 행정대집행법 개정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경향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추상 수위를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반개발’이 구호에 그치는 경향이 공존해 왔다. 그 ‘당장’이나 그 ‘근본’ 모두 수십 년 동안 같은 과제를 제시하며 맴돌고 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그것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2) 다시, 근본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폭력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폭력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쳐,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파괴하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용역폭력은 개발 구역에서 살아가는 거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거권과 생존권 등의 기본권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 자체를 훼손한다. 용역폭력은 몇몇 용역업체, 또는 몇몇 용역깡패들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 아니라 개발과 관련된 법·제도가 불러들이는 폭력이며, 경찰과 지자체의 방관과 부작위에 힘입어 번성하는 폭력이다. 또한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폭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폭력에 맞서기 위한 출발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 인권이다. 연산군 시대(1503년)에도 “철거 전에 빈터를 떼어주고, 심한 추위에 의지할 곳 없으므로 봄을 기다려 철거”할 줄 알았고, 1948년에도 집에서 쫓겨나면 거리에서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을 내쫓아서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개발 바람에 시달린 우리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¹¹⁾.

- 이○솔_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보다 앞서는 가치가 대체 무엇입니까.
- 여○숙_ 회사서도 굶신, 집에 가선 집주인에게 굶신. 이런 삶 이제 그만!!!
- 임○청_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일상은, 집에서 시작되고 집에서 끝납니다.
- 정○영_ 사람이 단지 숨이 붙어있다고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단순히 그 공간을 빼앗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장○영_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보장해주지도 않고 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만 우선시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개발 논리에 누군가의 인생을, 삶을 한 순간에 흔들고 너무 쉽게 없애려 하지 말아주세요. '말을 안 듣는다고' 강제로 쫓아내려 하지 말아주세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될 거라는 식의 논리로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 조○선_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가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자는 것인데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 소수가 행복한 것, 그것이 정의일까 의문이 듭니다. 법 또한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분명한데 다수를 아프게 하고 소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또한 잘못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_ 강제퇴거를 해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유들도 중요하겠지만 없는 사람의 아픔과 절망이 우선 배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교_ 이견을 극복하고 공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이 중요하며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순수해야 행복해지고 구성원 모두가 떳떳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영_ 강제퇴거로 주거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시와 구청에서 용역을 써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강제퇴거는 약자로서 참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바꾸어야 할 사회악이고 국가폭력입니다.
- 장○범_ 흑한 또는 흑서기간에는 퇴거금지. 재개발의 이익이 거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중장비로 무참하게 헐어내는 그런 반인권적인 무력행동을 금지하고, 설득과 타협으로 거주민을 상대할 것. 최소한의 이주비용으로 거리에 나앉는 거주민이 없도록 할 것. 이런 조항들이 보장되는 법안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누구나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주거와 생계활동 역시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11) 아래의 말들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다.

것이다. 지금의 개발은 일부 소수만을 위한 것이고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공간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파괴당한다. 이것은 빼앗기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서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¹²⁾. 물론 강제퇴거금지법은 이 모든 인권 침해의 종결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대안적 접근의 시작일 뿐이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추진 운동은 여러 가지 개선 과제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강제퇴거금지법은 또한 지금의 개발이 낳는 문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으로 ‘개발’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므로,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자리가 그때 만들어질 것이다.

“덩치도 크고 무시무시한 용역들 하고도 싸우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너무나 무 고생했어요. 그래도 우리 권리가 뭔지 배웠어요. 우리가 빼앗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강패들을 사서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는구나, 이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결국은 구석으로 몰리니까 그 지역에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998, 무악마을)

“승리한 집 말고 떠나간 집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 여기서도 한 두 집이라도 더 생존권을 보장받으면 좋겠다, 그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일 듯해요. 그렇게 생존권을 보장받는다고 했을 때 사회의 작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작은 발판을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하나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투쟁이 또 과정인 거겠죠. (...) 없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가 없으면 감히 꿈도 못 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억울하고 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2011, 명동2구역)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

◇ 참고자료

김경민, 도시개발, 길을 잃다, 시공사, 2011

김용창, 공간의 생산과 개발이익, 그리고 사회적 기속성, 문화과학 39호, 2004.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퇴거요건으로서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 손실보상,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2011.

12)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은 따로 첨부한다.

-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2008
-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2010.12.
- 변창흠, 정비사업에서 가옥주의 주거권 침해구조와 철거 퇴거 금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2011.
- 변창흠,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주거권의 성격과 침해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011.
- 안균오,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재정비사업 평가와 정책대안 연구, 2011.2.
-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2011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강제퇴거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2011
-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민주법학, 2011.
- 조규범,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 최병두,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2007.
- 최병두,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2호, 2009.
- 최병두,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1.
- 홍성태, 토건국가를 개혁하라, 한울, 2011.

[첨부자료]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제1장 총칙

제2장 강제퇴거의 금지

제3장 개발사업에 관한 특칙

제4장 벌칙 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여 「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퇴거”란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철거”란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철거예비행위”란 철거를 개시하기 전 창호, 벽, 문 등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 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
 - 다. 건축물이나 토지를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 중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으로 인한 퇴거되는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다수인인 사업

6. “개발사업구역”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말한다.

7. “거주민”이란 개발사업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생업을 위해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주택의 소유 여부, 주민등록의 여부, 국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8. “재정착”이란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나 현재보다 보호수준이 후퇴하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되었거나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강제퇴거의 금지 등

제5조 (강제퇴거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퇴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퇴거의 고지 등) ①퇴거의 고지는 건축물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퇴거를 고지할 때에는 퇴거 일시로부터 90일 이전에 미리 퇴거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퇴거 고지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전 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욕, 폭행, 협박, 손괴, 성적 괴롭힘, 위력을 행사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제6조 제2항에 따라 퇴거 고지 사실을 신고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거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용회복 및 파산면책제도, 고용촉진제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상담을 통한 임대료 연체 원인을 파악 및 해소계획 수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공무원 등 준수사항)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거가 실행되는 경우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을 현장에 파견해야 한다.

②파견 공무원은 퇴거 준비시부터 퇴거 완료시까지 퇴거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③파견 공무원은 퇴거를 실행하는 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제10조(퇴거시 금지사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에는 퇴거의 중단 명령, 응급 의료 조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퇴거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퇴거를 실행하는 자는 퇴거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참관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퇴거 주체는 퇴거되는 사람이 아닌 자로서 퇴거 현장 참관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퇴거 현장의 참관을 보장해야 한다.

②퇴거 참관인은 퇴거 현장에 머무르면서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 있고, 퇴거 현장의 상황을 수기,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③퇴거 참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퇴거시 금지사항) ①누구든지 퇴거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의 안전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퇴거 현장에서 폭언,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퇴거는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에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거되는 사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8조 제1항에 따른 과건 공무원이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에 따라 퇴거가 금지되는 시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철거시 금지사항) ①누구든지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퇴거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구역 전체에서 모든 거주민이 퇴거하기 전에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개별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철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 (퇴거 후의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대안적 숙박시설의 즉각적인 제공
2. 음식과 물의 공급
3. 위생시설, 의복,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생계수단, 교육시설
5.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장 개발사업에 관한 특칙

제13조 (개발사업 시행의 원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의 '개발사업'은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을 말한다)을 시행하여야만 주거환경 개선 등 관계 법률이 정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인가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인가 등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마다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30일 이상 공람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집단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거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과 협의하고, 거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거주민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후속대책을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정착 권리를 거주민에게 설명하고 거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주민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인권영향평가)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거주민의 퇴거를 요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평가(이하 '인권영향평가'라 한다)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외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
2. 개발사업 전후 거주민들의 주거권 지표
3. 개발사업 전후 생계대책과 사회안전망
4. 개발사업이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이후 차별 시정(사회혼합) 효과
5.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정보접근권
6. 개발사업 전후 교육권
7. 개발사업과 재정착, 퇴거 등의 사항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견 제시, 참여 및 협의의 권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 (재정착 대책의 수립) ①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를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보장 또는 안정적인 점유가 보장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주거의 설비, 성능, 면적, 주거비, 주변 환경, 학군,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상가 등의 공급(상가세입자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상가의 면적, 차임, 상권,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거주민이 임시로 이주해야 할 경우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퇴거하고 재정착하기까지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내용은 거주민에게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

④재정착 대책에 대한 협의는 퇴거 전에 완료해야 한다.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제15조의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때 일정한 한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에게 제15조 제2항의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입증책임) 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퇴거할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서 건물인도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 원칙의 준수(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에 한한다)
2. 제15조에서 정하는 거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 및 지원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준용) 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발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인·허가의 취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이 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주민을 강제퇴거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시행절차상 행하였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2. 개발사업 시행주체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를 위한 처분
3. 강제퇴거에 책임 있는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개발사업 관여자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를 위한 처분

제4장 벌칙 등

제20조 (벌칙) ①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범한 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2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및 제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파견 공무원과 퇴거 실행자가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퇴거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3. 퇴거를 실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

제24조 (과태료) 제6조 제2항에 따른 서면 고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 (징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김광원 | 다산인권센터

엄진령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1. 전체 개괄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힘 관계에서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자본가와 대등할 힘을 주자는 의미이며, 이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사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인 파업권을 사적 물리력을 동원해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경비업체이다.

이런 경비업체는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일상적 감시와 간부에 대한 테러, 대규모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 등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 파업시 용역깡패가 동원되었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경비업체는 파업시 대규모 물리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간부에 대한 테러 노조활동 방해 등 일상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체의 폭력은 파업후 복귀과정에서도 이어지는데, 출입 통제는 물론 조합원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한다. 즉, 예전에는 단순한 물리력 제공이었다면 이제는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해서 노조를 무력화, 와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체를 끼고 자행되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도급관계에서 사실상 폭력을 사주, 주도한 기업주는 책임이 면책되고, 경비업체는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벼운 처벌로 무마되는게 현실이다. 용역폭력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이

에 대한 사회적인 방조로 인해 이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노조와해를 위해 용역경비를 투입해 폭력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사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용역경비가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노사교섭결렬 이후 용역이 투입된 현장의 사례에서 명확해 진다. 사측의 장기간 직장폐쇄 후 복귀과정에서 용역폭력은 또다시 드러나는데, 교육과 밀착감시를 통해 노조활동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한편, 사측은 대규모 조합원 징계 및 어용노조를 만들어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귀후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노사간 쟁점이 되었던 요구사항은 다시 언급하기 힘들어지고, 노사교섭은 결렬된다. 이렇게 노동현장에서의 용역경비의 투입을 분석해보면 기업주의 의도에 따른 사용자의 물리력을 강화하려는 ‘노사관계의 개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폭력성을 떠나서 그 자체가 불법이다.

앞으로 살펴볼 2장에서는 2010년부터 노조과괴시나리오를 갖고 현장에 투입된 용역경비의 폭력성을 사례분석하고, 3장에서 용역경비업체의 성장과정과 노동현장에서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후, 4장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고찰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공격적 직장폐쇄에 따른 문제들과 업무복귀 후 인권침해성 교육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추가했다.

2. 용역폭력 투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변화 및 현장 실태

1) 개괄

2010년부터 노사관계에 용역폭력이 투입되면서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은 사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 보고서에서 사례 사업장으로 살펴보게 될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이다. 이들 사업장들은 기존에 비교적 안정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업장들이다. 이 안정적 노사관계의 배경에는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대항력을 가진 노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노사관계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상태 하에서 자본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는 장애요소가 되었기에 사용자로서는 이들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 이후 전략의 구상에 있어서 필연적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배경에는 2010년 1월 1일 날치기 통과된 개악 노조법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 도입’,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있었다. 노조법의 변화는 노사관계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그 하에서 복수노조 상태를 이용한 자본의 노조 개입전략이 적극적으로 구사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가 작동되었고, 그것이 발레오

만도, KEC, 유성기업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비한 사전작업 및 필요한 인사조치 등 -> 임단협 및 2010년 법개정 후 요구되는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등에 대한 교섭 거부 및 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투쟁을 유도 -> 용역 투입을 통한 선제적 · 공격적 직장폐쇄 -> 이후 생산재개 및 개별복귀 회유,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 대량 징계 및 손해배상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분쟁과 다르게 자본의 공격적 태도와 수위를 넘어서 불법적 방어 전략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을 동요시키고 이를 이용해 개별 복귀를 종용하여 이후 노동조합이 투쟁을 철회하고 복귀하더라도 현장에서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용역 폭력을 동원한 자본의 현장 점거,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릎 꿇리기 전에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이어 복수노조 설립을 통해 기존 조합원과의 징계나 손해배상 등에 차등을 둬으로써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지속해 가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용역의 폭력은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 점거의 주도권 싸움에 활용된다. 투쟁에 돌입하였든, 그렇지 않든 노동조합을 현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자본은 이후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자본의 전략 속에서 용역 폭력이 활용된 양태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획된 노조 탄압, 준비된 용역 폭력

발레오만도와 KEC, 유성기업은 앞서 밝혔듯이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다. 그러나 용역투입과 직장폐쇄 등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기 직전에는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본은 교섭을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면서 노동조합이 투쟁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발레오만도의 경우 2009년부터 경비, 식당 등 서비스 부문 외주화 시도, 단협 축소, 복지양보, 사무직 임금 반납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등은 기피하여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교섭이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결국 2010년 2월 4일 경비실에 용역회사 직원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잔업거부 등이 이어지자 곧바로 2월 1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동조합의 태업은 1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으나, 회사는 곧바로 노동조합의 투쟁을 빌미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사업장내의 조합원을 몰아내고, 이후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400명 정도의 용역을 투입하였다. 현상되는 사안은 경비직 외주화의 문제이지만 그간 지속되었던 노조와의 대화 거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인사개편 및 현장 통제, 그리고 노동

조합의 투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공격적 직장폐쇄 및 이후 조치 등에서 자본에 의한 기획된 탄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퇴직한 인사부문장은 지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그 사실이 증언되기도 했었는데, 그는 “발레오공조코리아(천안)에 이어 발레오만도 경주공장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무력화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매각, 청산, 하청 등을 (2010년) 3월 발레오 이사회 결정 이전에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임을 전제로 한 것”¹³⁾이라 밝혔다.

또한 KEC의 경우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사업장으로 평가되어 왔던 사업장이자다. 그러나 2010년 임단협에서 KEC 회사측은 전례 없는 완강한 자세로 일관했다. 교섭요구안을 3회독 할 때까지도 회사측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결국 KEC지회는 6월 초 징검다리 파업을 거쳐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측은 6월 30일 새벽1시 650명 가량의 용역을 투입하여 기숙사에서 조합원들을 몰아낸 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무려 1년간이나 유지되었고, 2011년 6월 13일에야 철회되었다. 이후 KEC 회사측은 개별 복귀 종용 및 어용 노조 설립 등 발레오만도에서 이루어진 자본의 노조파괴 책동과 동일한 양상으로 대응하였다.

KEC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2010년 초부터 준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KEC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노사협력과 주간업무 일지를 보면 KEC 회사측은 2010년 초부터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응하여 준비를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1월 개정 노조법 검토와 함께 관련 노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급 및 소사장제 도입 등 구조조정을 검토하였다. 이의 시행을 위해 2010년 2월 신노무전략을 수립하였고, KEC지회와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타협지점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서, 노동부, 시청, 지노위, 경총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이미 사전에 2010년 임단협에서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유성기업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미 2009년에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을 합의한 바가 있고, 2011년부터는 시행을 위한 제반의 사항을 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하면서 교섭을 미루었고, 이에 노동조합이 약 두 달 가량의 기한을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시기상조, 생산량 선합의 후 논의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였다.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 만국기를 달거나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하였고,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쳤다. 노동위원회 역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 지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투쟁의 양상과 동일한 것이었으나 2011년에는 사용자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현장 내에서 마찰을 발생시키고 이를 추후 징계 및 손배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5월 18일 20시,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 30여명을 배치하였다. 노조가 이에 맞서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공장 내로 진입하였

13) 일터의 함성(발레오만도 지회 소식지), 2010. 2. 26.자

으나, 그 후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인해 24일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원 연행되고 공장 내에서 끌려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공장은 300여명의 용역경비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던 교섭이었고, 지난 20년간 해오던 동일한 투쟁의 양상이었으나 회사측은 어느 해와 달리 강경하게 대응했고, 이는 사전에 준비되고 기획된 것이었다. 현대자동차 사측이 3월경부터 유성기업 공장 내에 상주하며 노사관계에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레오만도와 동일한 내용의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체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온 사업장에서 2010년, 2011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노사 간 충돌과 노조의 완전한 무력화를 의도한 탄압이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용역경비가 동원되었고, 폭력이 발생하였다.

3) 용역투입을 통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

자본은 지난 과정에서 직장폐쇄 당시 사업장을 노조에 점거 당하는 경우 이후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우선 당장의 생산에 차질을 빚더라도 노동조합을 사업장 내에서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는 KEC의 회사측 자료에 잘 나타나고 있다.

공장방어전략	
1. 기간 : 최소 ~7/3일까지는 타사의 직장폐쇄 초기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보다는 <u>공장방어 우선으로 전략수립</u>	14)
2.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용역 증원을 검토한다 (+200명)6/30	
6. 업무분장	
① 용역 : 외곽경비 및 조합측과의 대치상황을 총괄 해결한다.	
② 직원 : 채증, 상황과악, 비상연락에 주력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자본은 우선 공장을 점거하는 것에 주력한다. 발레오만도의 경우 설 연휴 직후인 2월 16일 06시 30분을 기해 직장폐쇄가 단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막기 위해 용역 400여명이 투입되었다. 사전에 신고 되어야 할 직장폐쇄는 당일 오전 06시에야 신고 되었고, 노동청은 06시 05분 바로 전화상으로 신고 접수를 확인하여 주었다.

“이미 직장폐쇄를 할 때, 400명 정도가 서울, 부산에서 온 용역이 대기하고 있었다. 용역이 들어오고 공장을 점거하고 난 이후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것이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

14) 2010. 7. 2.자 KEC '비상경영 상황일보'

도 사례)

“2월 16일 (조합원 중)소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끌려 나왔다. 이미 공장을 막을 컨테이너 같은 것도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KEC의 경우 공장 점거를 위해 6월 30일 새벽1시에 용역을 투입하여 기숙사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새벽 03시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미 직장폐쇄를 위해 전날인 29일부터 용역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용역투입이 실제로 알게 된 날은, 용역투입할 거라는 것은 예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하는 것도 있었고, 실제 투입된 30일 날 새벽 1시 정도에 용역이 사업장에 깔렸는데, 29일날 밤에 8시 40분 정도에 용역이 구미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지역 노조 간부들을 통해서 들었다. 650명 정도가 투입되었고. 조합원 숫자가 714명이고, 파업 당시에 조합원이 600명이었는데, 용역은 650명.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한 것이다. 새벽에. 이것이 어쨌든 여성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본 조사 인터뷰, KEC 사례)

사측이 사전에 현장을 장악하지 못했던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5월 24일 공권력 투입이후 300여 명의 용역경비들을 배치하여 조합원들의 공장 진입을 막았다.

이렇게 이루어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완전히 무력화 되었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풀리지 않았다. KEC의 경우 노조가 몇 번의 파업철회 선언을 했음에도 직장폐쇄는 1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노동부의 지속적인 권고에 의해서 2011년 6월 13일에야 철회되었다. 발레오만도 역시 99일간 직장폐쇄가 유지되다가 법원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처분이 나고도 6일이 지나서야 직장폐쇄가 철회된다. 유성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공권력 투입 후 바로 이루어진 직장폐쇄로 인해 공장 진입이 저지되었고, 이후 노동조합의 현장 복귀 결정에도 직장폐쇄는 철회되지 않다가 8월 31일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4) 용역폭력의 심각성

이렇게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을 위해 투입된 용역경비들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발레오만도의 경우 용역경비에 의해 현장진입이 가로막힌 이후 공장진입 과정과 지역 결의대회 과정에서 용역경비들은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고, 돌과 기물을 던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가했다. 또한 용역경비는 회사측이 주도한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도 개입하여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동원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공고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규약 제정 건, 임원 선출 건'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상정돼 진행됐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조합원 찬반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투표함은 찬, 반을 알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있었고, 미복귀자들 투표함도 따로 있었다. 이미 정해진 대로 임원 선출을 진행하려는데 한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을 추천했다. 이 조합원은 손을 들자마자 '조조모'회원들에게 총회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말했다.

'조조모'에서는 지난 5월19일 강행된 총회의 법적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찬, 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투표함을 분류하고, 미복귀자들의 투표함도 따로 설치했다. 회사측의 서약서를 강요하고 서약서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을 물리력을 동원해 총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참세상, 2010년 6월 27일자)

KEC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위해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기숙사에서 끌어냈다. 용역투입이 있던 2010년 6월 30일 새벽1시 당시 파업에 참가하고 있던 조합원은 600명 정도였고,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였다. 기숙사에 투입된 용역은 650명이었고, 이들은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기숙사에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현장에서 성추행과 폭력을 당했던 여성조합원들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KEC에서 16년간 일을 해 왔다는 조합원 A씨는 용역직원에게 의해 밖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합법적인 파업 중, 기숙사에 용역이 투입됐다는 소식에 1층으로 내려가 보니 용역들이 기숙사를 봉쇄하고 있었다.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니, 직장폐쇄 됐다고 후문으로 나가라고 용역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 과정에서 여성용역들이 밖으로 내쫓기 위해 내 팔과 다리를 들었는데, 한 여성 용역이 '여성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내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은 남자 용역이었다. 하지만 남성 용역은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오히려 욕설을 했다. 끌려나온 여성 조합원 중에는 임신 3개월인 사람도 있었다. 여성 조합원이 용역들에게 임신중이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끌려나왔다. 현재 천막 철야농성 8일째다.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싶을 뿐이다."(참세상, 2010년 6월 30일자)

유성기업의 경우 초기 현장에서 밀려난 용역경비의 차량에 의해 1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공권력이 투입되고 나서 용역경비들이 현장을 장악했으며, 지속적으로 조합원들과의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다.

“용역경비가 안에 한 300명. 300에서 350명정도가 이 아산공장에 있었고 저쪽에 영동공장에 100에서 150명 정도가 그쪽에 있고. 그러면서 개네(용역경비)들 하루 일당이 18만원에서 20만원이다. 그리고 이제 부장급 되는 애들은 일당 50만원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면서 매일 폭력이 발생 된 것이다. 매일. 뭐 폭력도 보통 폭력이 아니었다. 정문 막고 있으면서 우리도 정문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 저기 확 몰려나와서.. 22일 아침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34명이 다쳤다. 34명 부상입고, 우리가 병원치료 받고 진단 끊은 친구들만도 개네들 폭력에 노출된 사람만 한 70여명정도 된다. 그냥 가벼운 상처 같은 경우는 치료 안 받고 말았다. 그런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개네들 기본적으로 헬멧, 보호 장구, 곤봉 ... 햄머, 소화기 수백 개. 뭐 돌 던지고 이런 건 기본이었다. 소화기 뿌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소화기 다 쓴 걸로 그냥 바로 막.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다. 여기서 한 1~2미터에서 그냥 이렇게 던졌으니깐. 그렇게 맞았다. 애네들 햄머까지. 뭐 폭언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다.”(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5) 노조약화 후 지속적인 현장통제

이렇게 용역 폭력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 이후에도 용역은 지속적으로 현장에 머물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노조 무력화를 의도한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철회에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력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지속적인 개별복귀 회유와 대체인력을 활용해 공장을 가동하였고, 현장은 사용자와 용역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된다. 집단적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및 개별복귀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고, 이후 강도 높은 현장통제와 징계, 성과급 등을 통해 현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했다.

(1) 강제합숙노동, 대규모 징계, 성과급과 TFT를 이용한 강도 높은 현장통제 - 발레오 만도

발레오만도의 경우 법원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노동자들 108명이 복귀하여야 했으나, 108명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 58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대기 명목으로 생산현장 출입을 막았다. 별도 공간에 분리하여 CCTV와 용역경비를 통해 감시를 하면서 식사시간도 다른 직원들과 분리하여 행했다. 직장폐쇄 철회 전 개별 복귀자들은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막고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강제 합숙 노동을 시키는 일도 있었다.

“직장폐쇄 기간에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 다수가 있으니까 만날까 싶어서 2주, 더 길게 집에 못간 사람도 있다. 안에 가둬놓고 일을 시킨 것이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탈의장, 휴게실 이런데 침낭이나 패드 깔고 자고. 사장도 라꾸라꾸 사서 안에서 잤다고 한다. 밖에 나가면 투쟁 중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수도 있고, 설득되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걸 차다하기 위해 퇴근 없이, 강제숙식하게 하면서 가둬둔 것이다. 꼭 필요하면 납품차나 탐차, 밖에서 볼 수 없게 다 막혀 있는 회사차를 타고 나가게 했다. 심지어 경찰차를 얻어 타고 나온 사람도 있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이후 2010년 6월 10일부터 징계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7월 26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15명이 해고되었고, 11명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연속하여 징직 처분을 내린 후 올해 모두 해고했다. 또 발레오만도 지회에서는 기업노조가 이후 회사와 체결한 단협에 의해 정년이 단축되자 정년 단축을 이유로 해고된 2명과, 최근 징계 해고된 1인을 포함하여 해고자가 총 29명이 발생했다. 이후 공장 내 복귀자에 대하여도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총 383명이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감봉 3개월이 21명, 감봉 2개월이 45명, 견책 24명, 경고 173명 등 총 263명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발레오만도 회사측은 복귀자, 미복귀자 구분 없이 거의 전원에게 징계를 내렸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에 참여할 경우 노동자들이 당할 불이익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시켰다. 또한 그 가운데 지회의 간부나 전임 간부 등에 대하여는 모두 해고, 징직 등으로 현장에서 몰아냈고, 복귀자들에 대하여는 그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서 지회를 공장 노동자들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직장폐쇄 전 업무복귀 과정에서 170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업무복귀 프로그램인 2박 3일간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각종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예전 현대중공업 다물단 교육처럼, 여기는 화랑대 교육이라 해서 2박 3일 숙식하면서, 말은 개산학교라고 한다. 30km 행군, 여기 천막(해고자 투쟁 천막)을 어떻게 없앨 건지 선동하고. 집단 줄넘기, 오리걸음, 얼차려, 쪼그려 뛰기, 한강철교 등 세뇌교육을 하는 거다. 그 뿐 아니라 복지원에 매주 직원들을 돌아가며 1박 2일식 봉사활동을 시킨다. 가서 배추 뽑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또 회사는 인사고과와 성과급 시스템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3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에서 1, 2백만원 썩의 차등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2011년 들어서는 7등급으로 나뉘어져 더 세분화되었다. 회사가 주도하는 걷기대회, 합창단 등 각종 사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급 등급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직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무조건 최하위 등급이라고 위협을 가한다. 또한 산재연금자들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최하위 등급이고, 아예 라인에 배치하지도 않고 별도 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TFFT는 이러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제이다. 발레오만도 회사측은 나이가 많은

노동자와 회사측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70여명 정도의 TFT를 구성했다. '개선TFT'와 '지피지기TFT'라는 것을 만들어 라인에서 -> 개선TFT -> 지피지기TFT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회사는 성과급과 TFT를 가지고 통제한다. TFT는 연세 드신 분들이랑 회사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초기 70여명이었는데, 지금도 5~60여명 된다. 이 사람들은 주간만 하고, 잔업은 안 시켜준다. 유배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가면 풀 뽑기, 페인트칠, 기계 청소, 박스 닦기 이런 허드렛일을 시킨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단계가 있다. 지피지기 TFT가 최하. 회사가 봤을 때 아예 내놓은 사람들,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사무실에 앉혀 놓고, 말은 도와주는 형식인데, 어떤 건지 봐라 해놓고, 책 하나 주고 책 읽으라고 하고, 일을 안 시킨다. 이게 지피지기고. 개선 TFT가 박스 닦고 하는 거다. 거기서 잘 하면 라인으로 가고. 지피지기보다 위 단계가 개선 TFT, 거기서 라인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일반 현장에서 밉보이면 개선TFT로 떨어지는 것이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6개월마다 인사발령 내고 있는데, 일반 현장에서 밉보이면 TFT로 하락, TFT에서 열심히 하면 현장으로 보내주고. 양쪽을 다 이용하는 것이다. 또 처음에는 6개월 단위로 하다가, 이제는 꼭 그것도 아니다. 2달 만에 지피지기로 쫓겨난 노동자도 있다. 이유는 조합(발레오 지회) 간부와 인사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내질렀다고 떨어지고.”(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2) 반인권 교육, 대량징계, 희망퇴직 강요 - KEC

KEC의 경우에는 직장폐쇄가 풀리면서 189명이 집단 복귀하였으나 7주간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바로 현장 투입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7주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파업참가 정도에 따라 옷색깔을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였다. 교육장에는 카메라를 배치하고 용역을 통해 감시를 지속했으며, 교육장에서 식당으로의 이동도 줄을 지어 용역의 감시하에 이동하도록 하였다. 휴대폰도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교육시 거두어 들였으며, 묵언수행과 반성문을 강요하고 '명심보감'을 읽게 하는 등 각종 인격적 모독을 통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만들었다. 또한 교육생의 등급을 나누어 S등급에 대해서는 연장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 교육을 참지 못하고 40명 정도의 조합원이 퇴사하였다.

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직장폐쇄를 철회한 KEC는 170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교육하면서 파업가담 정도에 따라 노란, 파란, 주황색 티셔츠를 입혔으며 교육과정에서 휴대폰을 내지 않을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목언수행을 실시하는 등 징벌적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파업참가의 잘못을 고백하는 반성문을 쓰게 한 뒤 이를 낭독하게 하고 노조원들이 이동할 때는 줄을 맞춰 걷도록 했다. 심지어 노조원들을 개별 면담하는 자리에서 “회사는 파업참가자의 복귀의사가 없으므로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속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말만 교육이지 못 견뎌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여성노조원은 “노동자가 가는 곳마다 용역직원이 따라다니며 감사하고 있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특히 화장실까지 따라다녀 여성으로서는 불안감과 수치감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브레이크 뉴스, 2011년 6월 24일자)

또한 2011년 6월 13일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회사측은 KEC 지회 사무실을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격리 조치했다. 지회 사무실 주변에 펜스를 치고, 출입하는 조합원들의 사진을 채증하는 등 특정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혐오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노조사무실의 합법적인 출입조차 어렵도록 만들었다. 노조간부를 만나는 것을 차단하고 징계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대량의 징계 역시 이루어졌는데, 징계하고 확정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40명이며, 그 외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108명에 이른다. 또한 조합간부들 대다수가 5~6건의 검찰조사를 진행중이며, 조합원 95명이 더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해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짙다.

(3) 파업참가자 분리, 강제 숙박노동, 감시 · 통제 및 노동강도 강화, 어용노조를 통한 회유 - 유성기업

유성기업에서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조합원들이 순차적으로 복귀하였다. 회사측은 복귀자들을 수위별로 분류하여 두 개 교육장으로 분리시켰다. 그리고 나름 파업 참가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했고, 파업 참가 수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아예 분리시켜 두었다가 이후 바로 징계절차로 들어갔다.

“중재해서 들어 온 게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들어 왔는데, 복귀하는 순서대로 그 춘천 교육장이랑 저쪽에 조치원교육장 이런 데로 교육을 보냈다. 그것도 등급을 분류해서 약간 수위가 좀 그래도 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치원으로 보내서 교육을 굉장히 빠르게 시켜 놓고, 좀 강성이다 하는 사람들은 춘천으로 보내서 내팽겨쳤다. 분리시켜 버린거다. (춘천은 교육도) 전혀 없었다.”(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춘천 쪽을 갔었는데 춘천 쪽에서 3일인가 났고 징계위원회 때문에 다시 와서 징계했다. 거기에 춘천에 가 있으면서 쪽 날짜를 무리하게 잡아갖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을 무리하게 잡아서 춘천에 가 있던 놈을 여기서 버스로 데리러 왔다. 그러면은 한 그중에 해당자가 5명이다 그러

면 5명 신고 온다. 그리고 다시 데려다 준다. 징계 받고나면 데려다 주고 그러면 오면 막 11시 되고. 밤 11시 되면 이제 그거는 집에 갈 수도 없다. 차도 없고 그러니깐 여기서 찌그러져서 자다가 가던 사람도 있고. 또 데려다주면 그 다음 대상자 태우고 오고.”(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또 그 이전 복귀자들은 2주가량을 퇴근 없이 계속 공장안에 머물면서 작업을 시켰다. 출퇴근을 하면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귀하면) 무조건 작업을 했다.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8시간을 하고 잔업하고 싶으면 2시간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한 12시간씩 시키는 거다. 열한시간 열 두시간씩. 그리고 퇴근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뭘 지랄인가, 이런 회의감도 느끼면 출근 안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 전화하고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최소 2주는 출퇴근을 안 시켰다.”(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최소 2주는 무조건 출퇴근이 안됐다. 2주 동안은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뭐 출퇴근 할려면 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했다. 탈의장이나 바닥에서도 막 자고, 이런 거 깔고”(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그러면서 노동강도 역시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공권력이 투입되고 난 후 회사측과 용역경비에 의해 장악된 공장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었고, 출퇴근 확인도 이전과 같은 카드나 번호 방식이 아니라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또 화장실 갈 때조차 용역경비가 두세 명씩 붙어서 감시를 했고, 회사측의 작업장 통제 수준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서로 싹 끌려가고 난 그 다음부터는 (공장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CCTV달고 막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점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없었다. 그게 나중에 들어오자마자 막 다는 거다. 여기서기 지금도 잔뜩 달려있고. 또 옛날에는 카드를 찍거나 번호를 눌러서 출퇴근을 했는데 지금은 지문인식으로 한다. 왜냐면 카드 찍어주고 막 이렇다고. 그러면서 지문인식으로 싹 바뀌 났다.”(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지금 이미 작업강도는 최하 150%에서 200% 정도 올라갔다. 사람이 남는다고 할 정도다. 보통 따불한다고 한다. 따불 200%다.”(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통제도 굉장히 강하다.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용노조에 가있는 사람은 화장실을 맘대로 다녔는데, 처음에 복귀한 사람들은 화장실 갈려면 용역들이 두 명 세 명씩 쫓아다녔다. 담배

도 못 피게 하고. 그게 기본이었다. 지금도 노동조합사무실 간다고 하면 못 가게하고, 업무시간 이외에 가라고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자리를 못 비운다고 한다, 아예. 일하는데 자기 자리를 못 비우니까 금방 전화하고 쫓아오고. 뭐 작업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해갖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친기업측 노조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도 심각하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친기업측 노조로 넘어갈 것을 회유하고, 징계와 손배를 미끼로 협박하면서 기업노조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징계양정에서도 차별을 두었다. 1~3차까지 금속노조, 4~5차에서 친기업측 노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친기업측 노조는 징계의 수위가 훨씬 낮았으며, 일부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회사에도 지금 10일 정직 받은 사람들이 오늘부로, 그러니까 어제부로 끝났다.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다. 기계 닦으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만으로도 열심히 하면 된다, 너네들 자리 다 배치해줄지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더불어서 저쪽 노조로 넘어가면, 어용노조로 넘어가면 징계에서 빼주겠다. 손배가압류가 몇 개 들어와 있는데, 그 손배가압류에서 이제 빼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회유와 협박하고.”(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징계차수	대상인원	징계내용	징계인원	징계차수	대상인원	징계내용	징계인원
1차	106명	견책	8	3차	128명	징계안받음	2(어용)
		정직10일	13			견책	123
		정직20일	20			정직10일	3
		정직1개월	7	4차	117명	주의	89
		출근정지1개월	16			주의경고	26
		출근정지2개월	8			정직10일	2
		출근정지3개월	11			징계안받음	1(어용)
		2차	104명	해고	23	5차	94명
징계안받음	2(어용)			주의경고	10		
주의	19					견책	1
견책	46						
정직10일	16						
정직20일	8						
		정직1개월	2				

	출정1개월	4				
	출정2개월	3				
	해고	4	계	549명	징계	544명

6) 자본 간에 공유되는 노조파괴 전략, 용역경비의 이동

이러한 용역경비를 동원한 노조파괴 전략은 발레오만도를 시작으로 해서 동일한 양상으로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까지 이어진다. 각 사업장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을 시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흐름을 잘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자본의 노조파괴 전략이 실행되는 사업장에 따라 용역경비들도 이동하였다. 이동하면서 자본의 전략은 보다 고도화되고 발전되었다.

“처음에는 복장도 없었다. 진화한 것이다. 우리(발레오만도)한테 올 때는 검은색 복장, 체육복 입고 온 놈도 있었고. 공장 들어가면 작업복이 세탁되어서 탈의장에 걸려 있다. 그걸 몸에 맞지도 않는 것을 꺼내고 발레오 직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다. 그게 경비업법상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니까. KEC 들어갈 때는 옷을 맞춰가지고 간 것이다. 처음에 370명 들어왔다가, 생겨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장 복귀가 많아지니까 용역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마무리될 때쯤에 KEC로 옮겨간 것이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교도소 갔다 나와서 얼마 후 KEC가 직장폐쇄를 해서 구미에 갔다. 그런데 발레오에 있던 (용역)팀장이 음료수를 주면서 제 댄에는 반갑다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상신에 교육을 가니, 조장이 또 인사를 했다. 전국적으로 용역을, 한군데서는 그렇게 동원할 수가 없다. 몇 군데 업체를 짝 모아서 들어가는 거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6월경에 좀 소강상태에 있었고. 일부 여기 있던 용역들이 유성기업으로 갔고. 유성에서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경상병원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경상병원 조합원들)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거기 들어 있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겠다, 저랑 여성조합원들을 강간, 성폭행 통해서 처리하겠다, 인신매매하겠다, 음주를 가장한 방화 등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그게 나타난 것이 유성의 뺑소니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 문건이 드러나면서 용역이 철수를 했었다. 6월 20일 경 철수했다.”(본 조사 인터뷰, 경상병원 사례)

“농성장에서 티비를 보는데 2580에서 유성기업이 나왔었다.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내보냈는데, 우리(경상병원 조합원들)는 용역이 여기 몇 달 있었으니까 뒷모습만 봐도 안다. 유성에는 용역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아는 얼굴이 계속 보였다. 누구, 누구, 누구. 제일 앞에서 지휘하던 애도 여기 있던 애고, 그 발견된 수첩이 그 애 거다. 수첩에 몇 날 몇일 경

산 출장. 그 사람 외에는 다 상주했다. 개 밑에 실장 있고, 뭐 있고, 개들 나름대로 직급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다 상주했다. 개가 오는 출장일이 우리 집회 일과 비교해 보면 딱 맞는 거다. 개는 집회 있을 때만 왔었고, 용역이 좀 밀린다 싶으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첩이 그 사람 거라고 보는 거다.”(본 조사 인터뷰, 경상병원 사례)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2010. 2. 4.	- 태업 시작			
2010. 2. 16.	- 직장폐쇄 - 용역투입			
5. 19.	-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 처분 결정			
5. 25.	- 직장폐쇄 철회			
6. 7.	- 조조모 총 회, 금속노조 집단 탈퇴 결 정, 기업노조 설립	2010. 6. 4.	- 지노위 조 정종료 결정	
		2010. 6. 21.	- 전면파업	
		2010. 6. 30.	- 직장폐쇄 - 용역투입	
		2010. 8. 23.	- 직장폐쇄 - 용역투입	
		8. 31.	- 파업철회	
		10. 18.	- 직장폐쇄 철회	
			2011. 3. 25.	- 준법투쟁 돌입
			5. 13.	- 지노위 조 정중지 결정
			5. 18.	- 직장폐쇄 - 용역투입
			5. 24.	- 공권력투 입
			6. 13.	- 노조 현장 복귀 결정
			7. 14.	- 기업노조 설립
			8. 31.	- 법원조정 으로 업무복 귀
		2011. 5. 25.	- 노조 파업 철회, 복귀 선언	
		6. 13.	- 직장폐쇄 철회	
		7. 1.	- 기업노조 설립	

7) 노동부, 경찰 등의 공조

자본의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경찰 및 노동부의 공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레오만도 지회 노동자들의 태업이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이루어진 회사 측의 직장폐쇄와 이후 이어진 용역폭력의 투입 및 경찰력의 배치 등에 대해 노동부나 검찰은 모두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항이라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의 주된 근거로 발레오만도 지회의 경비업무 아웃소싱 철회가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었으며, 또 사측의 직장폐쇄는 매출 손실과, 완성차 업체와의 공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막기 위해 단행한 방어적 자구조치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용역들이 소화기나 폭행을 행사해도 경찰이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보는데도 소화기를 뿌리고 폭행을 행사했다. 직장폐쇄하면서 바로 시설보호 요청을 해서, 현장 진입이 노조 입장에서 더 어렵기도 했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용역들은 우리가 나가면 일부러 욕을 하거나 그랬고, 컨테이너 박스가 정문에 있는데, (우리는 이 농성장 쓰면서 거기 안 쓰는데) 거기도 창문 뒤쪽에 깨서 소화기를 다 뿌리고 그랬다. 스피커 틀고 있는데, 복면을 하고 나와서 선을 자르고 다시 담 넘어 들어가고 그랬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고하면 증거불충분이라고 그랬다.”(본 조사 인터뷰, 발레오만도 사례)

KEC 역시 마찬가지다. KEC지회는 파업은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갖춘 합법적인 쟁의행위였다. 2010년 6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각 지회별 보충교섭에 대하여 조정안이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KEC 지회의 파업을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몰았으며, 경찰은 사용자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해 늘 공장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

“실제로 경찰과 부딪칠 것은 없는데, 정문, 서문, 후문, 동문이 있는데, 직장폐쇄하면서 정문이 차단되니까 서문으로 출근을 했다. 그러면 서문가서 집회하고 가투를 했다. 경찰은 나와 있다. 서장부터 전부 다. 방수차도 갖다 놓고, 보고 있다가 때로는 체포도 하고. 공조했다는 느낌은 그 때부터 다 받았다. 정문에 천막을 치고 1년 동안 투쟁했는데, 맞은편 코오롱 앞에 항상 경찰 방수차가 들어가 있고, 항상 찍고 있었다.”(본 조사 인터뷰, KEC 사례)

“경찰은 고소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만 피곤해 지는 거다. 최근에도 한 건이 있었는데, 경

찰은 나와서 보고 있으면서도 용역이 폭행한 증거는 없다고 한다. 실제로 그 당시에 신고를 하면 파출소에서 나온다. 말리고 가는 정도가 다다. 조합원들은 어린 여성조합원들의 경우 사회가 왜 이런가에 대한 혼란, 분노도 많았다.”(본 조사 인터뷰, KEC 사례)

성추행과 폭력에도 경찰은 신고조차 받지 않고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용역 투입은 구미경찰서에 미신고된 불법투입이었음에도 경찰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용역들은 경비업법 상 사업장 투입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또 다른 피해 조합원 B씨는 통화목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경찰의 방관 행위를 증언했다. 새벽 2시 8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전화하니 ‘KEC’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않았다.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30분에 ‘신고하신 사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라는 경찰 측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이가 없었다. (참세상, 2010년 7월 7일자)

이러한 용역과 경찰의 공조는 유성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성기업의 투쟁은 회사측의 교섭 해태에 따라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시 절차를 모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차량으로 치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노동자들을 공장점거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며, 이후에도 용역경비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해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과 용역경비의 대치상태를 지켜보다가 용역경비가 물리력에서 밀리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정문에서 계속 싸운다. 그럼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다. 한 두명도 아니고 몇백명인데, 여기에 보통 경찰차가 열 대 이상 상주하고 있었으니까. 막 붙어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개네(용역경비)들한테 지게 돼 있다. 그러면 계속 보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진짜 열받아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몰려와서 같이 싸우면 그때 싹 가운데 꺼든다. 막으면서 등을 우리한테 대고 재네를 쳐다보는게 아니고 재네들 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를 막아선다. 항상 그랬다.”(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용역들을 어떻게 했었냐면 구사대, 소위 말하는 직원들이 바깥에 쪽 있었다. 거기에 용역들도 회사 작업복을 입혀서 같이 섞어 놓았다. 다 그렇게 앞에는 회사, 뒤에는 용역들 다 섞여 있었다. 그리고 공권력이 들어와서 딱 걷어내면 뒤따라 들어가는.”(본 조사 인터뷰, 유성기업 사례)

8) 그 외 용역폭력을 이용한 노조탄압 사례

(1) 무차별적 폭력, 극심한 상해 - 현대자동차 아산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하였다.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11월 15일부터 공장 점거 농성이 벌어졌고, 아산, 전주에서도 함께 파업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는 경비업무 외주업체인 웰비스 소속 용역경비 300여명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경우 1차 점거농성이 벌어진 11월 17일, 18일과 2차 점거농성이 있었던 12월 9일에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극심한 상태였다. 수십명이 골절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100명의 노동자들이 입원치료를 해야 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용역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웰비스’라는 업체가 있지만,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투쟁이 있을 시에는 인원이 대폭 증강시켜 투쟁에 대한 방어를 준비한다. 이때 투입되는 인력들의 실체는 알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된 용역들은 관리자들이 노동자들과 서로 안면이 있어 하기 힘든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른다.

“정문근무에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있는데, 파업시에는 100명 이상이 있다. 업체는 알 수 없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 때로 회사 작업복을 입기도 한다.”(본 조사 인터뷰, 현대자동차 아산 사례)

“11월 파업 당시에도 2~300명이 본관 지하에 대기하고 있었다. 문화관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평소에 없던 문신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본 조사 인터뷰, 현대자동차 아산 사례)

“투쟁할 때 헬멧 쓰고 들어와서. 무조건 폭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있다가 연대대오가 빠지니까 불이 탁탁 꺼지면서 우르르 몰려나왔다. “불 꺼졌다. 작업시작해라” 그러면서.”(본 조사 인터뷰, 현대자동차 아산 사례)

(2) 불법무기 및 장비 사용, 경비업법 위반 -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대규모 용역을 투입하였고, 이 용역들은 경찰병력과 합동작전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압했다.

이때 투입된 용역경비 300여명은 헬멧과 쇠파이프, 분말 소화기, 방패, 그물망 등으로 전원 무장하고, 조합원들을 위협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은 용역경비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측의 공장 진입 지침에 따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행위였다. 배치조를 짜고, 계획을 세워 진입 연습을 실시했으며, 같은 길이로 준비된 쇠파이프 등 사전에 단체로 무기를 준비해 온 사실이 있었으며, 진입과 충돌 과정에서도 용역경비들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회사측 직원 3000여명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공격과 중단을 행하였다. 게다가 불법적인 용역 투입을 통제

했어야 하는 경찰은 경비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무기와 장비가 사용되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묵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구사대와 용역, 경찰이 공조작전을 펼쳤다.

(3) 노동자에 대한 기획된 테러 및 지속적 폭력 - 유성기업,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유성기업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5월 19일 새벽 용역경비가 대포차량을 이용, 인도에 있던 조합원을 향해 돌진하여 13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건을 일으킨 용역경비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다.

경산 소재의 경상병원에서도 용역과의 충돌이 지속되었는데, 욕설, 모욕, 화장실 이용 방해 등의 인권침해는 물론이며 이사장 면담을 방해하고, 농성장에 무단침입하고, 집회를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유성기업에서 발견된 CJ씨큐리티(용역경비업체) 문건에서 경상병원에서 노조탄압을 위해 용역경비업체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6월경에 좀 소강상태에 있었고. 일부 여기 있던 용역들이 유성기업으로 갔고. 유성에서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경상병원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거기 들어 있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겠다, 여성조합원들을 강간, 성폭행 등을 통해서 처리하겠다, 인신매매하겠다, 음주를 가장한 방화 등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게 나타난 것이 유성기업의 뺑소니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본 조사 인터뷰, 경상병원 사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투쟁에도 용역경비의 폭력이 등장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CJ씨큐리티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용역경비들은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하고, 조합원들을 미행, 감시하였다.

9)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역경비가 투입된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의 형성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적 수단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으며, KEC의 경우 무려 1년간의 직장폐쇄라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사측 직원과 용역, 경찰이 공조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 시켰다. 이에 의해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합법적인 파업이었으나 노동부나 검찰에 의해 불법파업으로 호도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방어를 넘어서 불법적인 공격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자본의 노조 파괴 전략과 공권력의 방조 및 공조에 의해 가로막혔고, 노사관계는 비상식적일 만큼 비틀려졌다.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무조건적 불법과업의 낙인은 이렇게 노동자들의 투쟁과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다. 자본은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공장을 틀어막았고, 이것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숙박, 감금노동으로 비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공장을 자본의 전횡 하에 놓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의도는 노동자들을 옷 색깔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반인권적인 징계성 교육의 형태로 드러났다. 화장실조차 용역경비의 감시 하에 가야하고, 공장 내에서의 이동조차 용역의 감시 하에 줄을 지어 이동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20년 이상을 함께 일한 노동자들이 자본의 징계 위협과 용역폭력에 굴하면서 서로 만남조차 회피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용역(경비)업체 실태 및 용역 활용의 양태

1) 개괄

민간경비 산업은 1960년대 초 미8군 부대의 경비를 시작으로,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10여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급성장하여, 2010년 현재 3,473개 업체에 142,363명의 경비원이 종사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인력 위주의 단순경비에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1) 경비업체 현황

(가) 연도별 법인 및 허가업종 현황(2010.12.31) - 경찰청 자료

구분	업체 수	업종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2007	2,834	3,387	2,726	52	416	138	55
2008	3,043	3,628	2,923	51	446	146	62
2009	3,270	3,906	3,144	50	489	139	84
2010	3,473	4,151	3,351	52	514	140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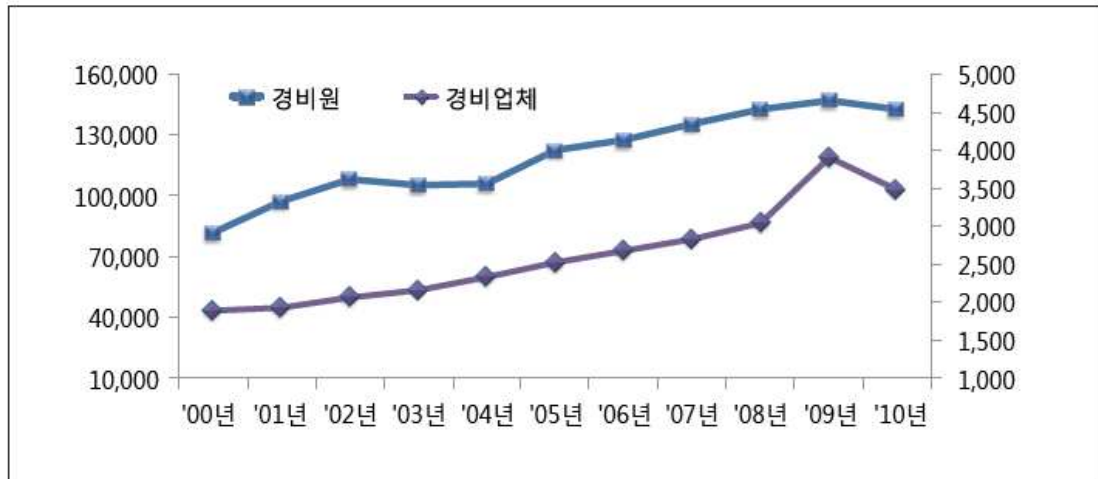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 영업 가능법인 및 허가업종 현황

(나) 연도별 경비업체 및 경비원 증감 현황 - 경찰청자료

(단위 : 업체수, 명)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경비업체	1,882	1,929	2,051	2,163	2,322	2,515	2,671	2,834	3,043	3,270	3,473
경비원	81,618	97,117	107,963	104,872	105,697	122,327	127,620	135,400	142,453	146,805	142,363

(단위 : 업체수, 명)



한국경비산업발전사(백산출판사)를 보면 90년대 중반까지 20명 미만의 업체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계	0-20명	2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400명
1992년	372	174	144	23	12	19
1998년	1,225	699	436	51	15	24
증감율	329.3	401.7	302.8	221.7	25.0	26.3

(경비협회 발표)

(2) 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

(가) 건설사처럼 소규모 팀단위로 움직이며, 하도급구조로 되어있음.

아래 내용을 보면 지방인원동원이나 대규모 인원 동원 시 프리팀 또는 작은 업체들이 하도급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ISB홈페이지의 게시판중에서...(<http://www.isbguard.co.kr>)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	제3회 이벤트산업전 개최	이벤트산업전	2011-11-10	11
31	☺ 프리팀입니다. 인원 50명 입니다.	야망	2011-10-27	1
30	안녕하십니까?T.G.S입니다	T.G.S	2011-10-15	26
29	백두경호팀입니다	곽호진	2011-10-09	25
2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1-09-14	1
27	만정안전기획 입니다	만정 안전기획	2011-07-28	65
26	출입통제 데드볼트 이염락 모형카메라	dcshop	2011-07-25	25
25	(주)YT경호기획입니다	(주)YT경호기획	2011-07-22	61
24	☺안녕하십니까? 여경프리팀입니다	김혜원	2011-07-16	4
23	프리팀장 안지혁입니다	안지혁	2011-07-13	66

제목	안녕하십니까?T.G.S입니다
작성자	T.G.S
등록일	2011-10-15
조회수	27
<p>안녕하십니까? T.G.S경호 프리팀 입니다. 저희 T.G.S는 부산, 울산, 경남 전체에 있는 현장에 투입하며 업무에 따라 타지방 근무도 가능합니다. 콘서트, 축제 등의 행사 전문 요원들과 시설보안, 이권분쟁, 재개발, 노조파업 등의 전문요원들을 분리하여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며, 최대 50~100여명까지 남,여 경호요원 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사진행요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 한번에 인원 수급이 가능하실 것이며, 경호요원과 진행요원의 마찰 및 업무상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타 지역 에서 원청 계약하시고 지방업체에 하청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u>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권 업무는 하청업체에 도급하셔도</u> <u>거의 모든 업무가 프리팀들에게 주어집니다.</u> <u>중간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락을 주셔도 귀사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u> <u>최상의 경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u>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현장업무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T.G.S였습니다. 꼭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T.G.S 경호 총괄팀장 올림 연락처 : 010- [REDACTED]</p>	

(나) 경비업체와 경비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찰과의 유착관계

아래 표는 한국경비협회에서 발표한 경비지도사 합격현황인데, 1,2회 합격현황만 보더라도 경찰 공무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퇴직 이후의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실제 경찰과 공조관계는 유성과 쌍용자동차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아래의 장세환의원실 국감 자료중 용역폭력발생시 양측의 경찰 기소율을 보

면 짐작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합격현황 - 한국경비협회

(단위:명, %)

구분	계	경찰공무원	경비업종사자			일반
			계	양성과정	경비업종사자	
1회 (1997.3.25)	2,398	1,480(61.7)	496(20.7)	187(7.8)	309(12.9)	422(17.6)
2회 (1999.10.31)	7,875	2,834(35.9)	1,672(21.3)	321(4.1)	1,351(17.2)	3,369(42.7)

기관	노동자/철거민(명)			경비/용역(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기타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기타
서울	10	766	29		48	15
부산		102	9		1	8
대구	1	106	22			7
인천	2	212	6			
광주	1	374	50		18	91
울산	15	200	41		23	53
경기	2	590	42		7	1
강원		5				
충북		111	33		7	
전북	2	328	31		11	
전남		130				
경북	9	589	58		1	1
경남	1	276	44			4
합계	43	3,789	365	0	116	180
	3832		365	116		172
	91.3%		8.7%	40.3%		59.7%

※ 한진중공업, 유성 등 수사 중인 사항 제외했으며 경찰에 고소·고발·신고·인지된 사건별 기소된 자를 기준으로 함.

2) 업체 개요 및 용역 투입 현황

(1)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용역업체

CJ씨큐리티, 장풍 HR, SGTS, 아이원가드, (주)티피에스씨큐리티, 웰비스 등이 주로 알려진 노동현장에서 움직이는 용역업체들이지만 웰비스 등 몇몇 대규모 업체 외에는 하도급구조로 용역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는 경상병원이거나 유성에서 원청 기업과 계약한 경비업체와 폭력행위발생시 고발 및 손배 관련 업체가 다른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CJ시큐리티는 유신코퍼레이션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자관 부루벨코리아 씨엔엠 수원여자대학 삼성물산등 많은 노동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2) 용역강패들의 이동 실태

- 용역강패들의 이동 양태,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 등

3) 용역 활용의 양태 (사례 중심으로)

(1) 대규모 파업시 사측의 물리력으로 활용

<노동현장 별 대규모 투입현황>

현장	일시	인원	업체	현장	일시	인원	업체
한진중공업	2011.6	150	CJ씨큐리티 장풍HR	현대자동차	2010.11	300	웰비스
발레오만도	2010.8	400	SGTS	쌍용자동차	2009.6	300	(주)마린캡스
KEC	2010.6	650	CJ씨큐리티	3M	2010.6	100	-
상신브레이크	2010.6	-	컨택터스(주)	유성기업	2011.5	350	CJ씨큐리티 아이원가드
경상병원	2011.6	50	CJ씨큐리티 아이원가드				

(2) 노조무력화를 위한 시나리오로 활용

사업장	쟁점	노사갈등 진행양상
발레오만도	경비업무 외주화	2010.2.4 야간작업거부→2.5 정의행위찬반투표→2.16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배치→2.22 노조업무복귀선언→5.19 금속노조탈퇴(탈퇴를 결정한 총회에 대해 무효라는 법원판결)→5.25 직장폐쇄철회(법원조 정)→6.7 어용노조 설립 *15명해고, 30여명퇴사, 24억원 손배청구
KEC	타임오프 등 단체 협상	2010.6.21 노조파업→6.30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배치→2011.3 업 무복귀한 조합원 400여명 금속노조탈퇴→5.25 노조파업철회→6.13 직장폐쇄철회(법원조정) *35명 해고포함해 100여명징계, 301억 손배청구
유성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2011.5.18 노조2시간파업→5.18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배치→6.13 노조업무복귀결정(사측의 거부)→7.15 어용노조설립→8.31직장폐쇄 철회(법원조정) *27명 해고포함해 544명 징계, 70억 손배청구(법원기각)

(3) 일상적 조합 활동 방해

용역경비의 일상적인 폭력은 피해자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만 실제 처벌은 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재능교육에서 미행 및 개별테러에 대해 112신고한 내역을 보면 총 40건이나 되지만 현지계도 또는 현장정리로 처리되었다.

- 현장 출입 제한
- 집회방해(사전집회신고 및 집회장소 선정, 집회시 몸싸움 등)

- 선전물 훼손
- 조합원 및 조합간부 미행
- 조합원 테러(자동차 타이어펍크, 차량돌진 등)

(4) 현장 감시

- 현장에서 노동자 감시
- 복귀후 감시활동(동태, 화장실가는 횟수 등)

(5) 생산현장에 대체인력으로 투입

- 사측의 장기직장폐쇄후 물량조달을 위해 생산라인에 대체인력으로 투입

(6) 개별폭행

- 국민체육공단은 선전물을 부착하는 김00 조합원을 폭행, 재능교육은 한00조합원을 식당에서 집단폭행 등

(7) 기타사례 추가

- 언어폭력, 면담방해, 감금 등

4.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1) 조사의 결론

(1) 자본의 사설 경찰력화 되고 있는 용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자행되는 용역경비의 폭력과 쟁의행위 및 노조활동 방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주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용역업체를 통해 용역경비를 고용하고, 이들을 동원해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행사 및 일상적 감시, 현장출입 통제, 노조활동 방해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이 같은 용역경비의 폭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용역경비를 활용하여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는 행위는 용역

경비 개인의 폭력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이든, 일용계약이든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행하는 폭력으로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자본은 수십억의 비용을 들이며 노조 파괴를 위해 용역경비를 동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은 국가와 사회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해지고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용역이라는 자본의 사설 경찰력이 노동자의 권리를 법제도를 넘어 제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사례들에서 보듯이 자본은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도 생산량을 유지하고, 피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역을 투입하여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 약화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 통제를 목적으로 용역을 공장 내에 상주시키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 제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고용은 그 자체로서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2) 노사관계 변질 및 노동자 권리 침해

용역투입으로 인해 대등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는 상실된다. 노사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사측의 압도적 물리적 우위에 의한 사용자 의도의 폭력적 관철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는 약화되고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력은 극대화되며, 자본은 친기업적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관리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친기업 노조로의 회유가 벌어지고 있으며, 민주노조 탈퇴를 위한 협박과 각종 회유가 벌어지고 있으며, KEC의 경우에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현장에서 몰아내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용역경비를 활용한 부당노동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발레오만도지회의 경우 친기업측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된 노동조합의 총회에까지 용역경비가 투입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출석을 가로막았으며, KEC의 경우 용역을 통해 현장을 관리 통제하면서 민주노총 탈퇴 및 퇴직 압박을 넣고 있고, 조합 사무실 통로를 폐쇄 · 격리하는 등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3) 자본의 자력구제에 대한 공권력의 용인

이러한 자본의 용역경비를 동원한 자력구제는 형행법상 금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경찰 등의 공권력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명백하게 재개발 현장이나 소유권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현장, 노사분규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24시간 전에 해당지역 경찰서장으로부터 배치명령을 받아 투입되도록 하고 있다.¹⁵⁾

그러나 경찰은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투입을 제한 없이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KEC, 유성기업 등은 용역경비 배치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

15) 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 보고대회 및 해결방안 토론회, 2011. 9. 28.

해서는 용역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의 가벼운 처벌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에서처럼 경비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불법장구 사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넘어 공조하여 노조 진압작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노동부 역시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여 이러한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용역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폭력 금지 원칙의 재확인이 필요

자본은 이렇게 투입된 용역경비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용역경비업체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관리자가 일일근로계약을 통해 고용한 용역이라는 등으로 주장을 번복하며 불법 사실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역경비에 의한 것이든 관리자에 의한 것이든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의해 자행되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이 유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생산 현장이라는 공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주체이다. 사용자의 소유권에 근거한 권력이 무조건적으로 용인되는 순간, 노동자에게 일터는 죽음의 공간일 뿐이다. 그러한 생산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맞서 대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단결하여 투쟁할 권리가 있음을 우리 법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전근대적 노사관계에서 필요했던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 폭행 금지'를 거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2)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1) 사용자의 노동자 폭력 금지 원칙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노동자의 행위가 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¹⁶⁾.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용역경비들의 폭력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면책의 근거가 됨으로써 사용자가 용역경비들을 이용한 노동탄압을 조장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앞서 다양한

16) 사법연수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9, 124면 참조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감시 및 협박을 통한 인격권을 침해하며 불법 조합활동을 채증한다며 상시적인 촬영을 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러한 조합활동에 대한 경비들의 감시 및 폭력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를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노동3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헌법 준수 및 노동3권 존중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는 사용자의 용역경비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 현행 법률 체계의 한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 하겠다.

(2) 사용자의 용역 경비 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

(가) 현행 법률 체계 및 한계

용역경비의 노동현장 개입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경비업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합법적 경비업의 조건, 경비업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규제조항 및 의무위반시 제재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용역 경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고용한 용역경비가 시설보호가 아닌 근로자의 일상노동 및 조합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현행 경비업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만으로는 대응함에 한계가 있다. 사용자는 용역경비들을 직접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의 의무 위반시 제재조항이 있을 뿐이고, 경비업자의 의무위반을 지시한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경비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지라도 사용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요건에 해당함을 노동자·노동조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한계는 경찰 및 공권력이 용역경비들의 불법적 노동현장 개입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간접적으로 조력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즉 사용자나 용역경비들이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반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용역 경비들의 폭력행위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용역경비들의 '인적 사항 불특정' 등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하며,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용역경비들의 불법에 대하여는 수수방관하거나, 파업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용역경비들이 전경들에 합세하여 진압작전을 수행하며 경찰의 조력자로 활동한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안

① 필요성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 또는 노동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대우(제1호), 황건계약의 체결(제2호),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단체행동에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대우(제5호)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이하에서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용역경비들을 노동현장에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협박하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등 단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 등 불이익대우가 없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사용자가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를 직접 사주하였다는 사실 등 교사행위 및 공모행위의 증거가 있어 용역경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재 및 처벌수단이 전무하다.

이에 사용자가 용역경비를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자들을 감시·협박·폭행함으로써 단결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② 경비원을 통한 노동감시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

사용자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경비업체를 통하여 간접 고용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고용인원, 고용기간 및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사전 통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전 통지 없이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정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겠다.

예컨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6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사용자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고용기간, 고용인원, 업무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통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한편, 파업기간 중에 경비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사용자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경비업체를 통하여 간접 고용하는 경우 불문)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인 배치 및 고용계획(인원, 기간, 담당업무, 경비용 장비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 및 경비원에 대한 인적사항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파업 중 경비원을 이용한 조합활동 방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을 이용한 촬영 및 채증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 등 촬영장비를 설치하고, 경비원들이 조합활동을 촬영하거나 녹취한 다음 이를 증거로 징계 및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i)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할 경우

- ㄱ.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의무,
- ㄴ. 설치장소 및 내용 통지의무, 설치장소에 고지의무
- ㄷ. 각 사항에 대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의무

ii) 사업장에서 사용자 및 경비 등 사용자가 고용한 자가 노동자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취를 할 경우

- ㄱ. 사전 동의 의무 부과(예외조항,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고 중대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 ㄴ.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및 사용자가 고용한 자가 촬영한 동영상은 노동조합 및 촬영된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복사 제공의무

iii)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사용하여 불이익행위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의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사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로 간주한다.

(다) 경비업법 개정 방안

① 경비업자의 의무 강화

ㄱ.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록한 명부 작성 및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 허용

ㄴ.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인권보호 조치, 명확한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 강화

② 경비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ㄱ. 경비원 결격 조항 추가하여 경비업법 위반하여 유죄판결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비원 취업 금지,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의 경비원 취업금지

ㄴ. 경비원 교육의 강화 및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

ㄷ.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 및 위협감을 주는 문신, 복장 등을 노출시키는 행위 금지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못하도록 함

ㄹ. 경비원의 복장 통일, 소속 및 직책을 표시한 명찰 패용 의무

ㅁ. 휴대할 수 있는 장비 종류의 한정 및 그에 대한 신고의무, 장비에 대한 임의 개조 금지

ㅂ. 경비업무 수행시 인권보호 조항 등 준수하여야 할 업무수칙 규정

ㅅ.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 강화

③ 시설주 및 사용자(도급인)의 의무

ㄱ.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 금지

ㄴ. 도급인인 시설주 및 사용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경비업체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

(3) 경찰의 감독 책임 강화

사업장에서 경비원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위해를 가할 위험 있는 경우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물리력의 행사를 제지하도록 의무규정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4) 용역 폭력 근절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용역 폭력 근절 및 노동권 보장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하여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불법행위 및 폭력행위를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비원”이란 사용자가 시설보호, 신변보호 등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해당 경비업체가 파견한 경비원 및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 등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을 의미한다.

제3조[경비업법 준수의 원칙]

사용자는 경비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경비업자 및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자에 준하여 경비업법에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사전 통지의무]

1. 사용자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고용인원, 고용기간 및 경비원의 업무내용, 경비원의 이름 및 사진 등 인적 사항을 일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사업장에서 복장을 통일하고 명찰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동영상 등 촬영행위 규제]

1. 사용자는 사업장에 CCTV 등 촬영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 다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에 촬영장비 설치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설치한 촬영장비에 대하여 설치장소, 촬영방법, 설치기간 및 촬영물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설치신고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비원 또는 사용자가 고용한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CCTV 또는 경비원 및 사용자가 고용한 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녹취록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촬영·녹취된 당사자는 사용자에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쟁의행위 기간 중 배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경비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배치 목적·인원·기간·업무·경비용 장비 및 소용비용을 기재한 배치계획서에 의하여 관할 노동청에 배치하기 7일 전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의무]

관할 노동청은 사용자 및 사업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경비원의 폭력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사용자 및 경비원을 관할 경찰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5. 기타 법률적 검토사항

1) 직장폐쇄의 위법성

(1) 개괄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측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상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장의 점유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생기게 하여 노동자측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평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인사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세력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때문에 사용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노사분규 현장에서 나타는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을 분쇄하고 노동3권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직장폐쇄가 적법한 것인지 검토하겠다.

(2) 직장폐쇄의 요건

노조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균형이 깨어지고 사용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아 대항수단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대항성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이를 직장폐쇄의 대항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직장폐쇄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교섭국면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쟁의행위의 개시 가능성이 높더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또한 대항성 요건은 직장폐쇄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직장폐쇄를 계속하기 위한 존속요건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가 그 후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¹⁷⁾

② 방어성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마자 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가는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교대제나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한 경우¹⁸⁾, 자신의 교섭안을 주장하거나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맞서 실시되는 경우¹⁹⁾, 노동조합이 시한부파업을 종료하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28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여 비조합원들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²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17) 사법연수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 321면,

18) 일본 최고재판소 1983. 6. 13.자 판결(사법연수원 324면 각주 인용)

19) 김유성, 노동법 II, 전정판, 287면

20) 대전지방법원 1995. 2. 9. 선고 93가합566 판결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출근하려는 것을 저지하거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경우 등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정당성이 부정된다.²¹⁾

“피고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준법투쟁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③ 직장폐쇄의 범위

사업장의 일부만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는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은 전면적 직장폐쇄는 직장폐쇄의 대항성·방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사업장 일부에 대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업장 전체의 조업이 무의미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면적 직장폐쇄도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직장폐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다만 부분파업이나 지명파업과 같이 일부 조합원만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더라도 그러한 노무제공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²²⁾.

(3) 직장폐쇄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레오만도와 KEC,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서라면 노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며 사측은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할 것이다. 그러나 발레오만도와 KEC, 유성기업의 경우가 과정이 역순으로 진행된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이 직장폐쇄를 이용하는데, 직장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도 전에 회사는 관리라는 명목으로 미리 공장점거를 시도했다. 발레오만도의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도 전에 회사는 2010. 2. 4. 미리 경비실에 용역회사 직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잔업거부를 하자 2.

21) 사법연수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 325면.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 개정3판, 268~269면

16. 새벽에 직장폐쇄가 단행되었으며, 사전에 신고 되어야 할 직장폐쇄는 당일 오전 06시에 신고 되었다. KEC의 경우 공장 점거를 위해 6. 30. 새벽1시에 용역을 투입하여 기숙사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새벽 03시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유성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은 2011. 5. 18. 13:30분경부터 약 2시간가량 부분파업을 진행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당일 야간조에 대해서는 파업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시간가량의 부분파업이 종료되고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후인 당일 17시경 직장폐쇄를 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끝낸 후에도 직장폐쇄가 유지되었다. KEC의 경우 노조가 몇 번의 파업철회 선언을 했음에도 직장폐쇄는 1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노동부의 지속적인 권고에 의해서 2011. 6. 13.에야 철회되었다. 발레오만도 역시 99일간 직장폐쇄가 유지되다가 법원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처분이 나고도 6일이 지나서야 직장폐쇄가 철회되었다. 유성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서, 직장폐쇄와 용역의 도입이 병행되었다. 직장폐쇄를 한다고 해서 용역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직장폐쇄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지 공장을 점거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직장폐쇄와 병행하여 용역을 도입하였고, 그 수는 엄청났다. 이처럼 이들 회사의 직장폐쇄는 직장폐쇄가 갖추어야 할 방어성, 대항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직장폐쇄 시 대체인력 투입의 위법성

(1) 개괄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쟁의행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노동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역시 근로파견이 허용되면 당해 사업에 관계없는 자를 대체근로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현장에서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레오전장은 3개월 이상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이 적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2) 대체인력 투입의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용자가 일체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재벌그룹과 같이 여러 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룹산하의 회사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계열회사에 속한 노동자나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라고 할 것이다. 「채용」이라 함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서 그 고용형태나 기간은 불문하므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학생 등 임시직 근로자를 동원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대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의 근로자로 하여금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파업기간 중 국민연금각출료 고지서 발송업무가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서울중부출장소에서는 그 작업에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하여 돕게 하였음은 사실로 보이는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피고공단이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도록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대항행

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이러한 채용 또는 대체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행하여지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²³⁾.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한편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이유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 즉 사업의 확장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자연감소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은 허용된다. 또한 당해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인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있다.

(3) 직장폐쇄 시 대체인력 투입의 위법성

KEC, 발레오만도,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를 한 후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들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직장폐쇄의 기간에서도 알 수 있다. KEC의 경우 직장폐쇄는 1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발레오만도 역시 100일 이상 직장폐쇄가 유지되었다. 유성기업도 그러하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의미도 있지만 회사에도 공급 차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직장폐쇄는 단기간에 끝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가 장기간 직장폐쇄를 했다는 것은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대체인력의 투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즉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차질을 빚지 않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체인력은

23) 사법연수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 316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용역업체들은 공장을 점거할 인력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신 수행할 인력까지 확보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체를 대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현장 복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

(1) 개괄

노동3권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다. 노동3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한편 사법적 구제절차와 별도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행정적 구제절차까지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노동3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작태가 노동 현장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수법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하다.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한 후 복귀한 노동자들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보름 이상 공장 복도에서 취침하도록 하면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과 격리시킨다. 또한 바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성 교육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면 발레오전장은 복귀한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직원을 1대1로 배치한 다음 출퇴근을 못하게 막고 회사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배려 씨크릿’, ‘다큐3일’ 등의 프로그램 시청 등 독서 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 변화를 요구했다.

(케이스 내용 확인 후 추후 보완)

(2)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정당한 단체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노조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의행위의 경우 그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은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절차상의 위법이 곧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노동자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는 부여하는 이익을 주지 않는 소극적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관계의 지위에 관한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대우에 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불이익이나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²⁴⁾.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4. 8.30. 선고 2004도3891 판결)

“사용자측이 파업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파업 이후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일괄 차단한 것은 비록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산업별 조합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4. 7.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정신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처분이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불이익취급으로 인정된다. 가령 기존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 개정3판, 324면

의 업무에 비교하여 부적당하거나 불쾌한 업무로 전근이나 배치전환을 한 경우, 장기간 현장근로만 하여 온 근로자를 본부의 사무직으로 발령하는 것처럼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전근시키는 경우,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책상까지 치워버리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을 먼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²⁵⁾.

(3)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문제가 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 KEC지회의 경우, 2010. 5. 27. 2010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재적대비 71.89%²⁶⁾의 비율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이에 KEC지회는 2010. 6. 9. 1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KEC지회는 전체 조합원 714명 중 약 600여명이 여성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지회로 이번 쟁의행위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의 경우도 2011. 5. 17. ~ 18. 지회에서는 양일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78.2%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어 쟁의행위를 실시하였다. 발레오전장도 2010. 2. 5.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을 거부하고 의식 교육을 실시했다. 출퇴근 거부와 의식 교육은 단체협약은 물론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불이익조치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끝>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II, 개정3판, 326면

26) 투표인원대비 83.18%

※본 토론회는 '2011년 4.9통일평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